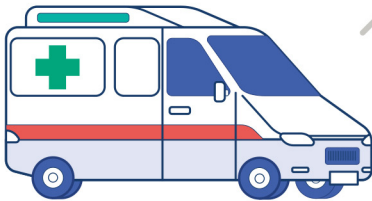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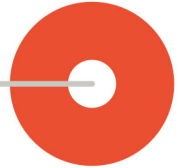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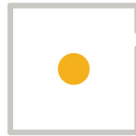


제5판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

2026. 8.



Guidelines for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Ambulance



■ 발간 연혁

- 제1판 ('14.6.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 관련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

- 제2판 ('14.8.26)

1판 배포 이후 자주 제기된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

※ 소방 구급차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 '119구급차 통보제 처리 지침'에 따름
('14. 8. 14일 배포)

- 제3판 ('15.1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허가 세부기준 보완

- 제4판 ('22.5.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주요 민원 질의사항 추가

- 제5판 ('26.8.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 반영, 주요 민원 질의사항 추가

CONTENTS

I	구급차의 개요	1
II	구급차의 운전자	2
III	구급차의 용도	4
IV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7
V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15
VI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24
VII	기타 구급차의 의무설치 장비	34
VIII	기타 구급차의 관리기준	45
IX	구급차 운전자, 응급구조사 등의 준수사항	48
X	구급차 운용 신고(통보)	64
XI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70
XII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 점검	81

+ 불 임

1.	구급차 부착용 이용안내(안)	83
2.	이송처치료 영수증 양식	84
3.	의약품 관리대장	85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제출방법	87
5.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작성·보존 방법	99
6.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106
7.	응급환자이송업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107
8.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109
9.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116
10.	재발급 신청서	117
11.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개요	118
12.	시·도별 구급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121
13.	시·도별 구급차 신고 현황	122
14.	시·도별 응급환자이송업 현황	124
15.	민간구급차(응급환자이송업체) 현황 확인방법	132
16.	Pre-KTAS 교육기관 현황 및 이수증 발급	133

제5판의 주요 변경사항

제5판의 주요 변경사항	쪽수	비고(시행일)
III. 구급차의 용도	4	
• 구급차 용도 관련 다빈도 질의 추가		
IV.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7	
• 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및 요금항목 신설 등 반영		
- 세부 요금 적용 기준 안내, Q&A 수정 및 추가		
V.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15	
• 법령 상 문구로 수정 및 다빈도 질의 추가		
VI.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24	
• 법령 개정에 따른 구급의약품 추가		'26.8.14
VII. 기타 구급차의 의무설치 장비	34	
•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 (4~5호 운운자) '26.10.14.시행 / (1~3호 운운자) '27.10.14.시행		
- 구급차 운행 기록 및 영상 기록의 조작 또는 위조·변조 금지		'26.7.13
-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 보관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 또는 위조 변조한 것으로 보관한 경우 처분 기준 마련		'26.7.13
IX. 구급차 운운자, 응급구조사 등의 준수사항	48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신설		'25.1.1
- 구급차 운운기록의 전자적 작성·관리 의무화		'26.7.13
- 환자 인계·인수자 범위(의사 → 응급의료종사자) 확대		'26.7.13
-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관련 사항 반영 및 Q&A 추가		
• 지도의사 선임 관련 다빈도 질의 추가		
XI.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70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		
-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		'26.7.13
- 이송업 사무실 면적(66㎡) 기준 폐지		'25.3.11
- 시설 등의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 마련		'26.7.13
붙임		
• [붙임1] 구급차 부착용 이용안내 변경	83	
• [붙임2] 이송처치료 영수증 양식 개정	84	
• [붙임4]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제출 방법 업데이트 및 Q&A 추가	87	
• [붙임5]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작성 방법 및 Q&A 추가	99	
• [붙임7] 응급환자이송업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추가	107	
• [붙임11]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개요 변경	118	
• [붙임12] 시·도별 구급차 담당부서 및 연락처 현행화	121	
• [붙임13] 시·도별 구급차 신고 현황 현행화	122	
• [붙임14] 시·도별 응급환자이송업 현황 현행화	124	
• [붙임15] 민간구급차(응급환자이송업체) 현황 확인 방법 추가	132	
• [붙임16] Pre-KTAS 교육기관 현황 및 이수증 발급	133	

I 구급차의 개요

▶ 정의

-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장비 등의 운반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

▶ 구급차 종류(응급의료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구급차는 크게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구분
 - (특수구급차)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 외관상 붉은색 표시
 - (일반구급차)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 외관상 녹색 표시
- 구급차 종류에 따라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 기준, 구급차에 구비해야 하는 의료장비, 의약품 기준이 다르게 적용

※ 자동차등록증의 ‘차명’에 특수구급차(예시: 스타렉스특수앰불런스, 그랜드스타렉스특수구급차 등)로 기입이 되어 있어도, 운용자가 이를 일반구급차로 운용하고자 하면 일반구급차의 도색 표시 기준 등에 맞도록 하여 일반구급차로 신고하고, 이를 일반구급차로 운용 가능
단, 일반구급차로 제작된 차량을 특수구급차로 신고하거나, 일반구급차로 신고 후 특수구급차의 비용 등을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II 구급차의 운용자

▶ **법정 운용자**(응급의료법 제44조)

-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운용자만 가능

구 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소방청 및 지역소방본부(119구급대), 보건소 등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 이송 목적에 활용하도록 하며, 환자 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와 는 별개로 별도의 허가절차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취득해야 함
 - 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자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마사회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스키장업자, 4륜 자동차경주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일정 조건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가 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 사업주가 지원해야 할 항목 중에 “구급용구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구급차 운용 가능
 - ※ 사업장의 구급차 신고를 받는 데에 있어서는 의사, 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동 사항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서 확인증을 발급 받아 오도록 함
 - ※ 사업장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보건관리자의 책임 하에 구급차 운용 본래의 목적에 맞게 관리·운용되어야 하며, 신고 이후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운용현황에 대해 기록 철저(사업장 내 안전팀 등에서 목적 외 임의 사용이나 타 기관 대여, 이송업 운용 등은 불가)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현재 서울시소관 비영리법인이 유일)

▶ 관련 처벌 조항

- 이송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응급의료법 제60조제2항제3호)
-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의 운전자 외의 자가 구급차를 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응급의료법 제60조제4항제2호)
- 응급의료법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응급의료법 제60조제4항제3호)

III

구급차의 용도

▶ 구급차 용도의 한정(응급의료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응급의료법에서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 금지

구 분	내 용
• 응급환자 이송	▶ (용도)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이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되는 사람) ▶ (비용) 응급의료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
•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 (용도) 이식수술 등을 위한 장기 이송 및 관련 의료진의 이송도 가능 ▶ (비용) 구급차의 운용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 계약을 통해 산정
•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 종사자의 운송	▶ (용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 (비용) 구급차의 운용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 계약을 통해 산정
•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 (용도) 현장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례의 경우 장례식장으로의 이송이나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실시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지로의 이송 목적으로 사용 가능 ※ 관련 유권해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해석례 > “구급차”로 검색 「구급차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법제처 13-0187)」 ▶ (비용) 응급의료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 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용도) 감염병 관리 등 지역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협약 등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 ▶ (비용) 응급의료법 제24조에서 정한 이송처치료를 준수하되,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자율적 계약을 통해 산정

구 분	내 용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용도) 의료기관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을 위해 교통편의 제공 목적으로 사용 불가 (비용) 응급의료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용도) 체육행사, 지역행사 시 행사주체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구급차 대기 업무 수행 가능 - 대기업무의 장소는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업무 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허가 외 지역 영업 시 응급의료법 제51조제1항 위반), 국토순례·체육경기 등 지역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행사는 지역별 업체 활용 (비용) 구급차의 운용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 계약을 통해 산정(단, 대기 비용을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음)

▶ 관련 처벌 조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를 용도 외로 운용한 자에 대해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의 자동차등록 말소 요청 가능 (응급의료법 제45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를 용도 외로 운용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서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01 사망자 이송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인가요?

- ▶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 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3-0187, '13.6.18)
- 한편,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장례식장까지 이송은 가능할 것이나 장례식이 시작된 이후의 시신 이송(예: 장례식장 → 화장장 또는 매장지)은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02 구급차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은행이나 관공서 방문 등을 위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 ▶ 응급의료법 제정 취지 및 구급차의 정의 등을 고려할 때, 구급차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진료 등 의료적 목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은행·관공서 방문 등과 같은 개인적인 업무 및 비의료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구급차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03 구급차 등에 환자 이외에 보호자가 탑승할 수 있나요?

- ▶ 구급차 내의 보호자 동승 인원수에 대해 응급의료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구급차에 탑승하게 되는 필수인력 외의 탑승인원은 환자의 중증도 및 상황(예: 소아 환자의 보호자 탑승 등) 등을 고려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탑승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구급차의 이송처치료('26.8.14.시행)

※ 2026년 8월 14일 0시 이전 환자 이송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제4판)」를 적용함.

▶ 이송처치료의 부과(응급의료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음
 - ※ 개조 등을 통해 구급차 운용자가 임의로 구급차 구분(일반, 특수) 변경 불가
- 구급차 이용과 관련하여 이송처치료 외의 추가비용* 청구 불가
 - * 부당 추가비용의 예: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의약품 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 이송거리는 환자가 실제로 탑승한 거리에 따라 산정
 - ※ 왕복, 시외 지역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 요구 불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구분	요금의 종류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등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40,000원	26,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500원/1km	1,000원/1km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95,500원	63,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2,300원/1km	1,500원/1km
공통	할증요금 (평일 18:00~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6,000원/10분	

-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따름.
 (3) “대기요금”은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으로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기관도착 연월일”부터 “이송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며, 병원 도착 후 30분경과 후부터 10분 단위로 책정함.
 (4) 선박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승선하여 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함. 다만, 도선료,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 부과 가능함.
 (5)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 대기요금 산정: 병원에 도착하여 30분을 초과한 때부터 대기요금을 부과하며, 초과시간 10분 미만을 절사하지 않고 10분 단위로 올림.

〈 대기요금 산정 방식(예시)〉	
대기시간	대기비용
~30분	-
30분 1초~40분	6,000원
40분 1초~50분	12,000원
50분 1초~60분	18,000원
60분 초과 시 매 10분당	6,000원씩 추가

- 선박을 통한 구급차 이송 구간 요금 산정: 해당 구간은 이송시간이 10분에 도달하는 때마다 6,000원의 요금이 추가되며, 10분 미만의 시간은 절사

〈 선박 요금 산정 방식(예시)〉	
선박 이동 시간	비용
~9분 59초	-
10분~19분 59초	6,000원
20분~29분 59초	12,000원
30분~39분 59초	18,000원
40분 초과 시 매 10분당	6,000원씩 추가

- 도선료(선박 운임), 숙박비의 경우 결제 영수증, 거래명세서, 승선권 등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시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여야 하며, 증거서류 원본은 별도 보관하여야 함.(선박 운임 및 숙박비 외 비용 청구 불가)
 -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호텔 등의 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 내 전화 사용 등) 이용 비용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 도선료와 숙박비의 과도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상한액 내에서 청구 가능

〈 도선료, 숙박비 상한액〉	
선박운임	숙박비
특등실, 1등실 등 제외한 일반석 기준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Q & A

01 할증요금 시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할증요금은 할증 적용시간(평일 18:00~09:00, 토요일, 공휴일)에 환자 이송이 시작된 경우 기본 및 추가 요금에 각각 20% 가산됩니다. 다만, 구급차 할증 적용시간 이전에 이송이 시작되어 할증 적용 시간에 진입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으며, 할증 적용 시간 이후 발생한 추가요금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합니다.

02 공휴일 야간에 환자를 이송할 경우, 야간할증 및 휴일할증의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 ▶ 휴일과 야간 할증 요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구급차로 선박을 이용하여 이송 시 선박 요금에 승선 대기시간이나 하선 준비시간도 포함되나요?

- ▶ 구급차 이송 시 선박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송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항구 도착 후 발생하는 대기시간도 이송시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승선을 위한 대기 시간 및 하선을 위한 준비시간도 이송시간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 최초 출동하여 현장(또는 병원)에서 환자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선박 이송을 위해 이송하는 때와 선박 이동 후 하선 시점부터는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됩니다.

▶ 이송처치료의 수취

- 구급차 내부에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요금미터를 사용하여 운행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의무장착 대상〉(45p 참고)

- 가.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급차(의료기관)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의 구급차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이송업자 및 비영리법인)
- 다. 2019년 9월 1일부터 위 호에 따른 구급차 운송자는 자동차 검사 시 요금미터장치 검정을 함께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응급의료법 제50조에 따라 시정·정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 요구 시 응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해 구급차 운송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이송처치료 요금표(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를 구급차 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부착(붙임1 참조)

- 이송처치료를 받을 시 반드시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하고 별도로 보관.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갈음할 수 있음(붙임2 형식)

* 이송처치료 요금 항목 (1. 운행거리, 2. 운행요금(기본, 추가, 할증, 대기요금, 선박이송요금), 3. 구급차 탑승시간, 4. 기관 도착시간) 각각을 환자·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된 영수증과 함께 출력되는 매출전표(총액만 기재되는 형식의 매출전표 사용 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송처치료영수증 발급 필요)

※ 의료기관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 지도 등을 활용하여 이송처치료를 미리 산정 후 병원비에 합산하여 사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운행 시 미터기를 사용하여 나온 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불하도록 함

- 요양기관(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는 본인부담 100% 급여항목에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 급여의 본인부담) [별표 6] 1호 사목)

▶ 관련 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 비용을 받은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운전자에게 각각 면허·자격 등의 정지, 업무정지 처분 가능
(응급의료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마목)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의료종사자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구급차 운전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알선·유인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의료법」 제88조)



01 한 대의 구급차로 복수의 환자 이송 시 이송처치료 산정 기준은?

- ▶ 구급차의 내부기준 및 의료장비 기준, 감염관리 및 이송 중 응급의료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구급차 한 대당 한 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대규모 재난 사고, 다수인이 포함된 사건·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급차 한 대에 한 명 이상의 환자 이송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자에게 응급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A병원 소속 구급차가 외래진료를 위해 B병원으로 이송 후 대기하였다가 다시 A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이송처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환자 이송 시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법 제2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등 이송시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외래진료를 위해 이동 후 대기하였다가 다시 A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 기본요금은 1번만 청구하고 B병원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동안에는 B병원 도착 후 30분이 초과한 때부터 10분 단위로 대기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병원에서 출발할 때 다시 기본요금을 받으면 부당 추가비용 수취에 해당합니다.
한편, 의료기관 A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B병원으로 갔다가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여 새로운 요청과정을 거쳐 동일한 응급환자가 이전 이송이 종료된 장소에서 다시 탑승하였을 경우 별도 행위로 간주하여 기본 요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03 어떤 환자가 부산의 ○○응급환자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부산(자택) → 서울(외래) → 부산(자택) 으로 이동하였다면 요금은? 이 경우 통행료는?

- ▶ 부산 출발 → 서울병원에서 대기 → 다시 부산으로 귀가하면서 기본요금은 1번만 청구하고 실제로 환자가 탑승하여 움직인 거리에 대해 이송처치료를 받는 것은 합당하나, 서울에서 출발할 때 기본요금을 다시 한번 받으면 허가지역 외 영업 또는 부당 추가비용 수취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울병원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때에는 병원 도착 후 30분이 초과한 시점부터 10분 단위로 대기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울병원을 출발한 시점부터는 다시 이송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 ▶ 통행료 역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급차는 「유료도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의해 통행료가 100% 감면되므로 각 시·도를 통해 “긴급면제카드”를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신고필증, 허가필증 발급 구급차에 한해 신청 가능)

04

병원 구급차 내 요금미터장치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였더라도 이송처치료를 반드시 환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 ▶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를 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를 청구하면 이는 본인 부담률 100% 급여항목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별표 6] 1호 사목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아울러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영리 목적 소개·유인·알선 행위는 금지하고 있어 이송처치료 미청구 가능 여부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한계 안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대법원 판례 (2004도5724) 「의료법」 위반

-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다.

-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응급환자*의 경우, 발생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판단에 의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히 보내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 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응급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기준 제시

- 다만, 이 경우에도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이송 등을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응급의료법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55조제3항(벌칙)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응급환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정적·반복적으로 동일한 병원에 보내거나 환자·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미청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저촉 여지 없음

* 지리적, 의학적으로 처치가 가능한 병원이 인근에 1곳밖에 없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적절한 응급 의료를 할 수 없어 상급병원 또는 지역·권역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 등

- ② 거동불편자에게 이송처치료를 무조건적으로 받지 않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저촉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③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환자 등의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한 단순 이송 목적 사용 불가

☞ 참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징수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할 경우는 이송처치료 수취 항목에 미해당.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보건기관이 수취하여야 할 이송처치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관련 법규('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의료기관 이송처치료 징수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응급의료과-6943호 (2014.12.22.))

V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 응급의료법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구급차 기준 규칙”)
-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시의 제한 및 운행금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 구급차의 형태(구급차 기준 규칙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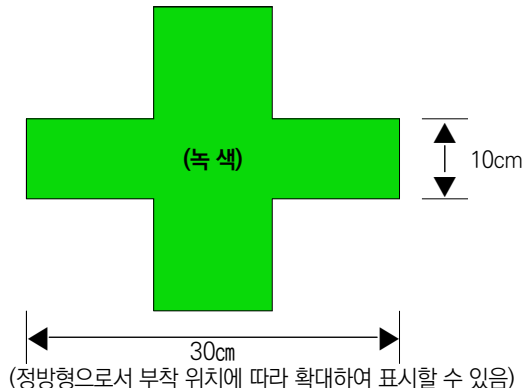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 지붕구조의 뒷개가 있을 것
 -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을 실을 수 있는 크기의 문이 있을 것

▶ 구급차의 표시

(구급차 기준 규칙 제3조, 119구급차는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 가능)

- 바탕색은 흰색: 구급차 외관의 50%를 초과하는 면적이 흰색일 것
-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녹색십자 표시
- 전·후·좌·우면의 중앙부위에 너비 5cm~10cm 띠를 가로로 표시

※ 띠 색깔: 특수구급차-적색, 일반구급차-녹색



V

○ 구급차 종별 글씨 표기

- (특수구급차)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붉은색으로 “응급출동” 표시
- (일반구급차) 붉은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 표시를 할 수 있음(“응급출동” 표시는 할 수 없음)

○ 좌·우면 중 1면 이상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

※ 상기 구급차 종별 글씨 표기 및 운용기관 명칭·전화번호 표시면은 해당 표기내용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흰색 바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 기타 사항 및 광고 등을 기재하는 것은 「의료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심의 절차에 따라야 함

○ 구급차와 유사한 도색 또는 표지 사용의 금지(「도로교통법」 제42조)

-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며,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등을 하거나 운전하여서는 안 됨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 구급자동차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광등, 사이렌 설치 가능

- (경광등) 녹색(다른 색은 불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백 칸델라 이하
- (사이렌)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2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일 것

▶ 구급차 내의 환자실 길이·너비·높이(구급차 기준 규칙 제4조)

-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센티미터 이상
※ 구급차 내에 운전석과 환자실을 구분할 수 있는 차체에 고정설치된 구획칸막이 설치 필요
(임시로 덧대놓은 각종 간이칸막이 등은 불인정)
-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끝에서 뒷문의 안쪽 면 사이: 2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 확보
- 구급차 환자실의 너비: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 때 적어도 한쪽 면과의 통로가 25센티미터 이상
- 구급차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 특수구급차는 150센티미터 이상, 일반구급차는 120센티미터 이상

▶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표면(구급차 기준 규칙 제5조)

- 설치된 장치: 차량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할 것
- 노출된 구조물의 가장자리: 16분의 5센티미터 이상의 반지름으로 깎아 내고, 노출된 모서리는 10분의 12센티미터에서 10분의 25센티미터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할 것
- 구급차의 환자실 표면
 - 비누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할 것
 - 살균할 수 있을 것
 -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을 것
 - 열에 강할 것
 - 청소하기가 쉬울 것

▶ 구급차의 내부장치(구급차 기준 규칙 제6조 [별표 2])

○ 구급차 내부 장치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구비하여야 함

〈구급차 내부장치 기준〉

구분	장치명	형식·형태·재질 등의 기준	수량
공통 (일반, 특수 구급차)	가. 간이침대 (Main Stretcher)	1) 시트의 재질은 가죽·인조가죽 또는 비닐이어야 한다. 2) 침대의 금속부분은 강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이어야 한다. 3) 차량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부속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시트에는 가슴·엉덩이·발목 등 3개 이상의 부위를 고정시킬 수 있는 환자고정장치(너비 5센티미터 이상인 띠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띠는 가죽·나일론 등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쉽게 조이고 풀 수 있는 조임쇠가 있어야 한다.	1식 (평상시는 차량에 부착)
	나. 보조들것 (Sub- Stretcher)	들것의 지지대는 가볍고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1식 (평상시는 접어서 한쪽 면에 부착하여 보관)
	다. 갈고리	1) 비닐팩으로 된 정맥주사용 수액 세트 등을 걸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2) 접으면 부착 면과 평행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개 이상 (천장 또는 옆면에 부착)
	라. 의료장비함	여러 의료장비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 의료장비들이 차량 내부에 흐트러지지 않게 정돈해 놓을 수 있는 별도의 함(종이, 플라스틱 또는 천 소재 등)을 구비하면 됨	1개 이상
	마. 응급의료인 좌석	간이침대 옆 또는 앞에 고정식 또는 접이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구급차에 간이침대 옆에 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긴 의자로 대체할 수 있다)	1개

구분	장치명	형식·형태·재질 등의 기준	수량
	바. 조명장치	1) 환자실의 이동조명장치를 제외한 모든 조명을 켜둘 경우 구급차 간이침대 표면에서 측정시 15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환자실의 조명등은 천장에 부착되어야 하고, 흰색 외에 색깔이 있는 조명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등에는 조명등이 깨질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참고. 조명등은 굳이 형광등일 필요 없이 자유로운 소재 선택 가능. 다만 색깔은 흰색으로 할 것	2개 이상
	사. 이동용조명장치	1) 이동시키면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비추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조명장치는 조명장치보다 밝은 조도를 가져, 환자 국소 처치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개
	아. 환풍기	환자실 내부 뒷면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1개 이상
	자. 전기공급장치(콘센트)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참고. 환자가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던 기본적인 의료장비(환자의 활력징후 모니터, 심전도 모니터링 장비 등) 등을 호환하여 연결할 수 있는 220V 전원 콘센트를 원칙으로 함 - 이 경우 일반구급차는 기존 전원선 등을 활용하거나 차량용 배터리에 별도로 직접 연결, 일정용량의 전원을 교류로 변경하여 220V 전원콘센트 형태로 출력하는 인버터를 설치할 수도 있다. (시거잭 자체만은 인정 안 됨)	2개 이상
	차. 기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의료장비 등을 갖추 수 있는 공간 및 설치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착물을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의 부착장치 설치

구분	장치명	형식·형태·재질 등의 기준	수량
특수 구급차	가. 간이침대 (Main Stretcher)	공통사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1) 접고 펼 수 있는 것으로 네 바퀴가 달려 밀거나 당겨서 손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 2) 침대의 윗부분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구조여야 한다. ※ 참고. 일반구급차-가.간이침대의 항목들에 더해서 추가로 1), 2)를 만족하는 간이 침대	
	나. 긴 의자	1) 환자를 실은 상태로 보조 들것을 놓을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2) 보조 들것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간이침대와 긴 의자 사이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1)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등으로 가볍고 잘 부서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사용한 물을 저장하였다가 버릴 수 있는 설비를 연결하여야 한다.	1개 (환자실 내부의 1개 모퉁이에 설치)
	라. 교류발생장치	1) 의료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교류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환자실에 있는 전기공급장치에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 자동차의 일반 주행 및 에어컨 등에 사용하는 주전력 배터리 외에 일정시간 동안 의료장비 등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 확보 - 이 경우 특수구급차는 별도의 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주전력 배터리 외에 추가 배터리 등을 설치 ※ 설치방법에 따라 자동차구조변경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자동차 구조, 설계방식에 따라 다름) 필요시 각 지역 자동차검사소*에 문의 *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77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 구급차의 운행연한(구급차 기준 규칙 제7조의2)

- (운행연한) 구급차는 일정 운행연한(차령) 하에서만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운행 불가
 -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령)을 9년으로 제한
 - 해당 구급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고,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이 경우 매6개월마다 연장된 차령 기간에 있는 구급차 역시 구급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고, 연장을 받은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장 가능 **최대 11년까지 운행 가능**
- ※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응급의료법 제46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구급차 기준 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음
- (차령기산일) 차령기산일은 구급차 운용 신고·허가·통보일과 무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산정

♣ 차령 기산일 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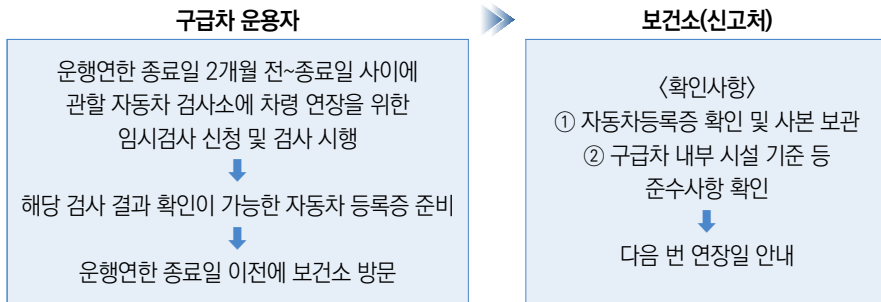
※ 차령 산정의 목적은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구급차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차량의 실제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연도 자동차 등록 여부에 따라 기산일의 일부 차이가 있음

-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제작연도의 말일

〈예시〉

구 분	제작연도	자동차 등록일	차령 기산일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	2019년	2019년 6월 1일	2019년 6월 1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2018년	2019년 6월 1일	2018년 12월 31일

○ (차령연장절차)



〈 예 시 〉

- 2015년에 제작된 구급차로서 2015년 10월 10일에 자동차 소유 등록을 하고, 구급차 운용 신고를 2015년 10월 17일에 실시한 경우
 - 차령 만료일:
자동차 등록일(2015년 10월 10일) + 9년 = “2024년 10월 9일”
 - 차령 연장 신청일:
차령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가능 = “2024년 8월 10일~2024년 10월 9일”
 - 임시 검사 합격 시 차령 만료일 6개월 연장:
차령 만료일(2024년 10월 9일) + 6개월 = “2025년 4월 9일”
 - 2차 차령 연장 신청일:
연장된 차령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가능 = “2025년 2월 10일 ~2025년 4월 9일”
 - 임시 검사 합격 시 차령 만료일 6개월 다시 연장:
차령 만료일(2024년 4월 9일) + 6개월 = “2025년 10월 9일”

Q & A

01 구급차의 차령 만료일 이전에 임시검사를 받았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 통지를 받은 경우 연장사용할 수 있나요?

- ▶ 차령만료일 이전에 임시검사를 받고 재검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차령만료일이 지났더라도 통지된 재검사 기간내에는 임시검사(재검사)가능하며, 검사결과 적합판정시 차령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차령만료일 이후 차령연장 처리 이전까지 기간에는 구급차로서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02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시 임시검사 대신 종합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아 연장할 수 있나요?

- ▶ 종합검사, 정기검사 등으로는 대체할 수 없으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VI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 의료장비는 아래의 기준에 맞춰 항상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환자에게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 필요
- 구급차 의료장비는 허가된 품목을 사용하고,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보관방법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구급차의 의료장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표 16])

구분	장비분류	구급차 구분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가. 환자 평가용 의료장비	신체 검진	• 체온계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 청진기 • 휴대용 혈압계 •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 체온계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 청진기 • 휴대용 혈압계 •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 환자감시장치 (환자의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모니터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 • 혈당측정기	
나. 응급 처치용 의료장비	1) 기도 확보 유지	• 기도확보장치 (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 기도확보장치 (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 (기도삽관튜브 등 포함)	
	2) 호흡 유지	• 성인용·소아용 산소 마스크 (안면용·비재호흡·백밸브) •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흡인튜브 등 포함)	• 성인용·소아용 산소 마스크 (안면용·비재호흡·백밸브) •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흡인튜브 등 포함)
		• 의료용 분무기 (기관제 확장제 투여용) •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구분	장비분류	구급차 구분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3) 심장 박동 회복	• 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4) 순환 유지	• 정맥주사세트	• 정맥주사세트
	5) 외상 처치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 부목(철부목, 공기 또는 진공부목 등) 및 기타 고정장치 (경추·척추보호대 등)	

가. 환자평가용 의료장비

- **(체온계)**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고막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 구비
※ 바닥에 떨어져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유리 등의 재질로 된 것으로는 하지 말 것
- **(청진기)** 환자 청진 또는 수동혈압계, 비위관 삽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청진기
- **(휴대용 혈압계)** 구급차량 내에 부착되지 않고 휴대하여 환자의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식 또는 수동식 혈압계

		
〈체온계〉	〈청진기〉	〈휴대용 혈압계〉

-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Pulse Oxymetry)** 손가락 등에 집게 형태로 물려서 환자의 산소 농도 및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식 기구.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또는 기관삽관, 기도유지기를 사용한 환자에게는

반드시 사용하여 산소포화도가 적정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

- **(환자감시장치)** 통상 ‘EKG모니터링’으로 불리우는 장비로, 환자의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전자식 모니터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를 말함. 구급차에서 분리하여 환자를 현장에서 구급차로 이송시 휴대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추는 것을 권장하나, 차량에 고정된 형태도 가능
- **(혈당측정기)** 환자로부터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을 전자식으로 측정하는 장비로 측정에 필요한 측정용지 및 이를 버릴 폐기물통 등을 포함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환자감시장치〉	〈혈당측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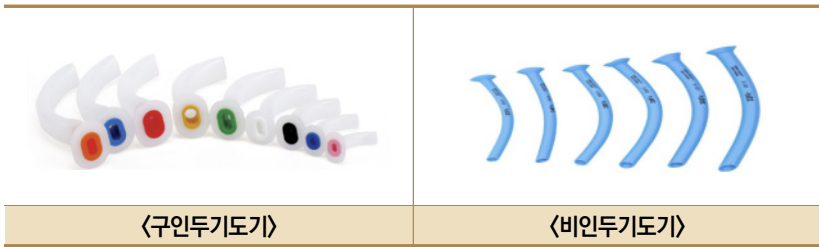
나.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1) 기도확보유지

- (기도확보장치) 구인두기도기 사이즈별*로 1개 이상 및 비인두기도기 사이즈별로 1개 이상(최소 총 4개 이상)

* 사이즈별이라 함은 성인용·소아용 각각 최소 1개 이상씩을 의미

※ 구강(또는 비강) 기도유지기는 사용 후 멸균소독이 가능한 소재로 하며, 사용 전 항상 포장된 상태 유지



-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기도삽관튜브 등 포함))

- 후두경은 핸들(손잡이)과 블레이드를 사이즈별*로 결합하여 결합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결합 시 블레이드에 불이 들어와야 함
- 기도삽관튜브세트는 사이즈별* 기도삽관튜브, 탐침(스타일렛), 기도 내 고정을 위해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주사기(balloon syringe), 삽관 후 고정을 위한 바이트 블록 등을 포함하며, 인공호흡기와 탈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 사이즈별이라 함은 성인용·소아용 각각 최소 1개 이상씩을 의미



2) 호흡유지

- (성인용·소아용 산소 마스크 (안면용, 비재호흡, 백밸브)) 단순 안면 마스크 (simple face mask), 비재호흡 마스크(non-rebreathing mask), 백밸브 마스크(일명 ‘앰부마스크’)를 성인용, 소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1개 이상씩 (최소 총 6개 이상)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산소공급장치와 연결하여 환자에게 산소가 투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구급차 내부에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정량의 산소를 비치하고 이를 환자에게 마스크, 비강캐놀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기구 일체를 의미
-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환자에게서 분비되는 분비물·혈액 등을 음압장치 등을 이용해 빨아들여 구강 또는 상처부위 등에서 제거할 수 있는 흡인기(Suction Device) 및 튜브*(suction tip, tube or catheter), 세척액 등 부속품 일체를 의미하며, 흡인기는 수동이 아닌 전기로 작동되는 형태로 갖추어야 함

* 튜브는 1회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의료용 분무기(기관제 확장제 투여용)) 기관지확장제 등을 분무형태로 만들어 환자가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네블라이저(nebulizer) 등
-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마스크를 통해 산소 등을 압력을 걸어 공급을 해야 할 상황이나, 들것으로 이송하는 등 이송 인력의 손 부족으로 이를 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 일시적으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로, 자동식으로 구비



〈의료용 분무기〉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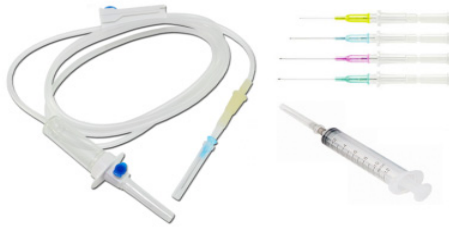
3) 심장박동회복

- (자동심장충격기(또는 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는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실세동 및 무맥성 심실빈맥(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

※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 및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

4) 순환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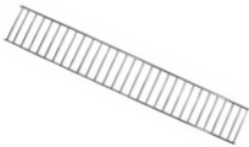
- (정맥주사세트) 환자에게 수액을 주사할 수 있는 주사바늘, 주사기, 수액 라인 등



〈정맥주사세트〉

5) 외상처치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 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 (부목) 철부목, 공기 또는 진공부목 등



〈철부목, Wire-splint〉



〈공기 또는 진공부목〉

- (기타 고정장치) 경추·척추보호대 등



〈경추보호대〉



〈척추 보호대-보드형태〉

▶ 구급차의 구급의약품(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표 16])

- 구급의약품은 필요시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구비
- 구급의약품은 공통적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이어야 하며,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보관하여 약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하고 [붙임3. 의약품 관리대장]을 상시 작성
- 모든 의약품 투여시 그 용법 및 용량은 지도의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를 것

장비 분류	구급차 구분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의약품	•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 *'26.8.14.시행	•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 *'26.8.14.시행
	•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소독제	•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 포비돈액	•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 포비돈액

○ 의약품

-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 환자가 출혈, 저혈압, 고혈당 등으로 수액 제제 투여가 필요할 시 응급으로 혈액량 등을 보충하기 위해 정맥투여가 가능한 형태로, 유리병이 아닌 비닐팩에 포장된 생리식염수(NS), 포도당액(5%DW), 하트만 용액 등의 제제
- **(에피네프린)** 심폐소생술 사용 용도로 한정되며, 임의로 희석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됨
- **(아미오다론)** 심폐소생술 사용 용도로 한정
-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비마약성진통약제

-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알러지 반응 등에 투여 가능한 항히스타민제
- (설하용 니트로글리세린, Sublingual Nitroglycerin) 협심증(angina pectoris) 등 허혈성심질환(ischemic heart disease)환자의 흉통 경감을 위해 투여*
 - * 2급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물에 대한 투여만 가능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Bronchodilator) 천식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용 기관지 확장제 약제*
 - * 2급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약물에 대한 투여만 가능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자동주입식 주사기('26.8.14.시행)
 - * 30kg 초과 및 30kg 이하 환자용 자동주입펜 각 2개 이상 구비할 것을 권고

○ 소독제

-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용 생리식염수와 별도로 상처세척용 생리식염수를 구비하여야 하며, 보통 비닐 팩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형태를 의미
- (알콜 또는 과산화수소수) 소독용 알콜 또는 과산화수소수 구비
- (포비돈액) 소독용 포비돈액 구비

♣ 의약품 구매 관련 참고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을 받아 응급의료법에서 정하는 의약품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에게 구매할 수 있음

* 관련규정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약품공급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의약품의 소매

나.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의 의약품 판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공급자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판매 사유)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별표 1의2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판매 사유"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 의약품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

▶ 구급차의 통신장비

- 특수구급차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구급차에 장착된 형태로 응급 의료전용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를 의미. 다만, 119구급대 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는 소방용 전파지정기준에 의한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구급차 무전기에 같음

* 현재 응급의료전용주파수는 미운영중으로 휴대전화로 대체 가능(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표 16])

-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의료종사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구급차 기준 규칙 제7조)
-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될 수 있는 상태 유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별표 17] 7.)

▶ 관련 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허가를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저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VII

기타 구급차의 의무설치 장비

응급의료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별표 16의2], [별표 17]

▶ 구급차 운행기록장치(Ambulance Digital Tachograph)

○ 정의

-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형태(예시)〉



〈기능: 시간, 속도, RPM 등 기록〉

○ 법적 장비 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별표 16의2])

장비 기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보의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1)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보관 기관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2) 구급차 운행 기록은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구급차 운송자는 운행기록을 조작 또는 위조·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4) 구급차의 운송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 운송자: '26.10.14.시행 **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급차 운송자: '27.10.14.시행 5)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급차의 운송자로부터 제공받은 구급차 운행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운송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구급차 운행 기록장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6) 구급차 운행 기록 장치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운행기록장치가 갖추어야 하는 장치 및 기능의 기준(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1. 장치 및 기능

장치	기능
가. 위치추적장치	1) 성능이 1Hz 이상일 것 2)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
나. 기억장치	1) 1초 단위의 데이터를 6개월 이상 기록·저장할 수 있을 것 2) 외부에서 입력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것
다. 이동식 저장장치 유선인터페이스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기억장치에 기록·저장된 운행정보를 추출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을 것

장치	기능
라. 운행상태 확인 장치(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1) 사용자가 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사용자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을 것
마. 운행기록 보안장치	1) 운행기록장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할 것 2) 운행기록장치의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바. 그 밖의 장치(운행기록장치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치를 제외한 장치를 말한다)	1) 차량속도의 검출이 가능할 것 2)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 검출이 가능할 것

2. 제1호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세부장치와 기능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04호)

운행기록장치의 세부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1. 장치의 구조

가. 구조 일반

전자식(Digital) 운행기록장치(이하 "장치"라 한다)는 자동차로부터 속도 등 운행기록을 검출 할 수 있는 수집장치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항법 장치, 시간 신호를 발생하는 타이머, 각종 신호를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로 변환하는 연산장치, 정보를 가시화하는 표시장치, 운행기록을 저장하는 기억장치, 기억 장치의 자료를 외부 기기에 전달하는 전송장치로 구성되며, 각 장치는 기능별로 통합 또는 분리되어 있을 수 있다. 장치는 분석 및 출력을 하는 기기를 포함할 수 있다.

나. 외형 및 케이스

- (1) 장치에 사용되는 재질은 강하고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 (2) 장치의 외부 모서리 및 코너부분은 부드럽게 처리되어야 하고 조립에 필요한 볼트머리, 너트,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홈 등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즉, 외부의 표면은 사용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 (3) 단말기 케이스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해 및 재조립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에 보안처리 되어야 한다.
- (4) 별도 물리적 전용단말기가 없는 커넥티드 DTG는 해당사항이 없다.

다. 위치추적장치

위치추적장치는 단말기에 장착되어야 하며, 그 성능은 1Hz이상이어야 한다.

라. 기억장치

6개월 이상의 1초 단위 데이터를 기록·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이동식기억장치 인터페이스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장치에서 습득한 운행기록 정보를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범용적으로 유통되는 이동식 기억장치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삭제)

사. 영상기록 보조기능(선택사양)

영상기록장치에 운행기록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모듈 또는 영상카메라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모듈을 갖추어야 한다.

아. MMI(Man Machine Interface)

사용자가 현 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와 사용자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한다.

자. 조작 방지

장치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 교정인자 설정기기 인터페이스

교정인자 값이 입력 및 변경은 장치에서 직접 설정할 수 없어야 하며, 외부의 별도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장치의 성능

가. 정밀도

(1) 주행속도계부 지시 오차

주행속도계부 지시의 허용오차는 표준 주행속도계 지시값의 $\pm 2\%$ 이내이어야 한다.

(2) 순간 속도 기록 오차

기록장치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표준 주행속도계 지시값의 $\pm 2\%$ 이내이어야 한다.

(3) 운행거리 기록의 기록 오차

운행거리 100km에 대한 오차는 2km 이내이어야 한다.

(4) 운행 시간의 표시 또는 기록 장치의 기록 오차

1 일용(분)	2일 이상 n일용(분)
± 2	$\pm [2 + 2(n - 1)]$

나. 기억 유지

장치는 외부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내부에 저장된 운행기록이 변형 및 소실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그 밖에 장치를 시험하였을 때 온도, 내진성, 전원 역접속성, 내과전압성, 내과도 전압성, 전자파 장해 및 내성, 정전기 방전 보호와 관련하여 장치 각 부에 이상이 없고 정밀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3. 장치의 식별

가. 장치의 단말기 형식승인번호와 제품일련번호로 단말기 표면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단말기 표시부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나. 형식승인번호는 형식승인연도, 기본형식승인번호, 변경형식승인번호로 구성하며, 제품일련번호는 모델명, 제작연도, 제작일련번호로 구성해야 한다.

(1) 형식승인번호 구성(10자리)

자리수	설 명	실제 값
1~2 (2자리)	형식승인년도	"00~99" 형식승인년도 2자리
3 (1자리)	구분자	"-" 승인연도와 기본형식 승인번호 구분자
4~7 (4자리)	기본형식 승인번호	"0001~9999"
8 (1자리)	구분자	"-" 기본형식 승인번호와 변경형식 승인번호 구분
9~10	변경형식 승인번호	"00~99"

예) 10-0001-00 → 2010년도에 승인되었으며, 첫 번째 승인된 제품으로 기본형이다.

(2) 단말기 제품일련번호 구성(14자리)

표기군	자리번호	표시내용	세부내용
차종구분	1(1자리)	적용차종 구분	1=공용, 2=승용, 3=승합, 4=화물, 5=특수
모델명	2~6 (5자리)	단말기 제조사 고유형식	알파벳 또는 숫자로 조합된 고유모델명 빈칸을 포함할 수 없음
제작년도	7~8 (2자리)	제작년도(yy)	"00~99" 제작년도 2자리
제작일련번호	9~14 (6자리)	제작일련번호	"000001~999999"

예) 1K25MD08000001: 공용이며, 모델명 K25MD, 2008년도 제작, 일련번호 000001

4. 장치의 기능

가. 위치추적 기능

장치는 1초 이하 단위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여 검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검출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차속검출 기능

차속은 1초 단위로 순간속도를 검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검출된 데이터를 1초 단위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억장치 기능

기억장치는 1초 단위 데이터는 6개월 이상 기록·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라. 무선통신 기능

- (1) 무선통신 모듈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무선통신 기능을 가진 장치는 해당 무선통신기술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 (2) 무선통신 기능은 전국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운행기록분석시스템과 통신을 통해 운행기록을 송신할 수 있는 기능으로 통신장애시 장애 및 오류내용을 사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마. 영상기록 보조기능(선택사항)

장치는 영상기록 보조기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 (1) 장치에서 영상기록장치로 운행기록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
- (2) 장치 내의 영상카메라와 연결되어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바. 기초정보 입력 및 보안관리

장치에 차량번호, 운송사업자코드, 교정인자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기초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표시장치에 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교정인자 입력 등

펄스 신호입력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의 교정인자 설정기기를 통한 다음 각 호의 교정인자 입력기능이 있어야 한다.

- (1) 속도 계산의 기초인자인 차량이 1km 주행할 때 속도센서에서 검출되는 신호수(pulse/km)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 (2) 분당회전수(RPM) 데이터는 엔진에서 RPM 계기판으로 올라오는 최종 신호를 확인하여 교정인자로 신호수(pulse/1회전)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 및 제3자가 임의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선택사항)
- (3) 교정입력데이터는 국가측정소급성을 가져야 한다.

아. 시간관리 및 교정

장치에 내장된 시계는 주기적으로 위성항법장치, 통신모뎀, 시간 서버 등으로 부터 수신된 시각에 의해 교정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자. 소프트웨어 관리

장치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수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간 통신을 활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차. 정보의 표시

장치는 외부조작으로 다음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 (1) 소프트웨어 버전
- (2) 형식승인번호
- (3) 제작번호
- (4) 현재 속도, RPM(선택사항), 일일연속주행거리, 일일연속주행시간, 자동차 번호 등을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
- (5) 장치의 전원공급 불량 등 장치의 고장 및 오류상태의 표시 또는 안내를 문자, 코드 등으로 시각 또는 청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
- (6) 운행기록 백업회수(최근 5회), 최근 백업일시 표시기능
- (7) 기억장치 접속시 백업 메뉴기능과 백업자료의 저장기능. 이 경우 백업 메뉴에는 백업회수(최근 5회), 최종 백업일시, 전체 백업자료 저장기능 등 사용자가 용이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 (8) 무선통신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송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써 일정시간 간격 또는 필요한 시간에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송출하기 위한 시간 설정 및 전송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9)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전자코드의 입력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입력방식은 근거리 무선통신 또는 별도의 입력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0) 장치는 운전자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장치와 연동되도록 인터페이스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11) 운행기록을 기억장치 등에 저장시 완료예정시간 또는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저장된 운행기록자료는 암호화된 파일로 되어야 한다.
- (12) 운행기록장치는 운행기록자료의 추출과 표시장치의 내용 확인이 쉽도록 시인성이 확보된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 (13) 운전시작시간, 운행시간, 휴식시간, 운행거리 등 주요 운행기록이 장치 내·외부의 기기를 통하여 종이 출력물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구급차 영상기록장치(Digital Video Recorder(DVR))

○ 정의

- 일반 카메라기능의 제품으로 차량에 일정 이상의 충격(사고발생)이 오면 사고 전후의 동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일명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 형태〉



〈기능: 영상정보녹화〉

○ 법적 장비 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별표 16의2])

장비 기준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로 한다.
정보의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1)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전면 방향 등의 외부만 촬영하도록 장착하고 교통 사고 증거수집이나 범죄의 입증 또는 예방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 기관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 구급차 영상 기록은 영상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구급차의 운용자는 영상기록을 조작 또는 위조·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5) 구급차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급차 영상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영상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은 5)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구급차 영상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운용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 구급차 영상기록 장치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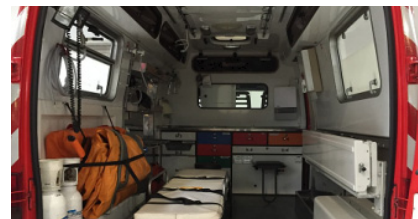
○ 정의

- 구급차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가 차량 전면을 촬영하여 주행 중 사고 등에 대한 영상 기록을 확보하는 기기인 반면에,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는 별도로 차량 내부에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도록 설치한 장비를 말함



〈영상정보처리기기 형태〉



〈기능: 구급차 내부 영상정보녹화〉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문

촬영목적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	설치장소 구급차 내 환자실 벽면/천장
촬영범위 구급차 내 환자실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환자 탑승중)

관리책임자: 000
연락처: 000-0000-0000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문〉 예시

○ 법적 장비 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6의2])

장비 기준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구급차 내부의 조도를 고려하여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영상촬영 기능과 그 영상을 디지털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타	1)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송 중인 환자(이송을 돕기 위하여 환자와 탑승한 보호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3)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 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항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차량 내 조영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을 끄는 등 영상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등 구급차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영상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로 수집된 영상정보는 1개월간 보관한다. 6)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자실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성명(또는 직책)·업체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사실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8)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구급차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책임자 외의 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다. 9) 구급차 운용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0)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구급차 영상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 정의

- 구급차의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장치

※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의 내부에 구급차 이용자에게 요금이 잘 보이도록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요금미터장치 형태〉 예시

○ 장착대상(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별표 16의2])

- 의료기관(다만,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의 경우에는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급환자이송업
- 응급환자 이송 목적의 비영리법인

※ 119구급대, 보건소 등 국가 및 지자체,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두는 마사회, 사업장 등의 운용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착하지 않아도 됨

○ 요금미터장치 검정(「자동차관리법」제47조)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 종류

구분	시행시기	검정기관
제작검정	요금미터장치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기관 등
수리검정	요금미터장치를 자동차에 부착, 요금장치 개조 및 수리한 때 실시하는 검정	시·도 지정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등
사용검정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및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실시하는 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 지정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등

- 요금미터장치 장착대상 구급차에 요금미터장치를 신규 부착 시 ‘수리검정’을 받아야 하고, 이미 부착된 요금미터장치는 구급차 차량의 정기검사나 임시검사 시 ‘사용검정’을 받아야 함

※ 제작검정은 요금미터장치 제작·수입자에 대한 의무로 구급차 운용자는 해당 사항 없음

○ 법적 장비 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6의2])

장비 기준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의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택시요금미터”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로, “택시요금체계”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요금체계”로 보되, 검정에 관한 사항은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관련 처벌 조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 또는 위조·변조한 것으로 보관한 경우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처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VIII 기타 구급차의 관리기준

▶ 구급차 및 의료장비의 소독과 청결(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별표 17])

- 모든 응급환자 이송시엔 이송시작 전 반드시 체온 및 혈압, 맥박을 측정하고, 감염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엔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종사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종감염병 등이 의심될 경우 이송시작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어떻게 환자·종사자 보호조치를 해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시에 따를 것

○ 구급차의 소독: 주 1회 이상 실시

- 낮은 수준 소독제(low-level disinfectant)*나 이를 함유한 환경소독용 티슈 등을 이용해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있는 구급차 내부 표면(침상, 문 손잡이, 조명 스위치를 비롯한 전체 내부) 및 의료장비(환자접촉면 및 사용자 손잡이를 중심으로)들을 깨끗하게 소독 후 잘 말릴 것

*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으나 결핵균과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소독제로 1:500으로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속칭 락스류), 4급 암모늄염 제제(염화벤잘코늄 등), 70~90% 알코올 제제(Ethanol /Isopropanol), 아이오도퍼 소독제 등을 말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5호 준용)

- ※ 일부 구급차 내부 표면의 시트 표면, 의료장비 표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은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식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내장재, 장비특성과 소독제의 특성을 확인한 후 적절한 소독제를 골라 시행할 것

- ※ 소독제는 식약처에 허가 또는 등록된 제품을 사용할 것

- 환자의 혈액 등으로 오염된 표면 및 바닥은 1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고 중간 수준 소독제*(intermediate-level disinfectant)를 이용해 제품별 기준에 따라 희석하여 세척 실시

* 세균, 바이러스, 진균과 결핵균은 죽이지만 세균 아포만 죽이지 못하는 수준의 소독제로 1:500으로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속칭 락스류), 70~90% 알코올 제제(Ethanol/Isopropanol), 아이오도퍼 소독제 등을 말한다.

- 환자의 침상에 린넨 등을 사용할 시, 깨끗하게 세탁 또는 소독된 린넨을 사용하고, 한 명 환자 사용 후에는 반드시 새 것 또는 세탁된 것으로 교체

- 구급차의 의료장비의 청결 관리: 사용 후 1회용 기구 등은 폐기 또는 소각, 그 외 재사용장비의 소독은 장비제조사 소독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의료장비의 환자접촉면 및 사용자 손잡이 등은 낮은 수준 소독제나 이러한 성분을 함유한 환경소독용 티슈 등을 이용해 사용 후 즉시 소독
 - 단, 환자에게 사용한 후두경날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5호)’을 준용해 준위험기구에 해당하므로 높은 수준의 소독을 실시하고 멸균증류수로 깨끗이 행군 뒤 건조 후 보관

구조장비의 확보(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별표 17])

- 긴급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구조 출동장비 구비
 - 비상등: 비상시 사용가능한 휴대용 조명기구 등
 - 신호탄: 섬광신호탄 등 반드시 화약류로 구매하지 않아도 됨
 - 소화기
 - 보온포

구급차의 차량 관리(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별표 17])

- 구급차의 연료 및 정기점검
 -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 이상을 유지하는 등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 자동차 정기점검일 준수(연 1회)
 - ※ 자동차 정기점검 주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의2]에 따름
- 구급차 별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함. [붙임5 참고]

관련 처벌 조항

- 구급차 신고필증 발급을 위해서는 응급의료법 제46조 및 제47조(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6], [별표 16의 2], [별표 17])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고, 동 사항 미충족 시에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음
→ 미신고 운용 시 자동차 말소등록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4의2호)

IX

구급차 운용자, 응급구조사 등의 준수사항

▶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금지

-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경우 응급 의료법에서 정하는 이송처치료보다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됨
(응급의료법 제24조,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마목)

- 비용을 직접 징수한 응급의료종사자 및 해당 구급차의 운용자 처벌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의료 종사자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
	의사, 간호사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1개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응급구조사의 기본 준수사항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업무 수행 시 의료장비, 무선통신 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 준수
(응급의료법 제39조, 제55조제1항1호, 제6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13])

1. 구급차내의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장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2.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소속기관으로 귀환하는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보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급차의 무선장비는 매일 점검하여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출동할 때부터 귀환할 때까지 무선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이후에는 가급적 경보기를 울리지 아니하고 이동하여야 한다.
5.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탑승 시 응급구조사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소속, 성명, 해당자격 등을 기재한 아래 표식을 상의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응급구조사				
사진	성명		자격	
			자격번호	제 호
	(소속기관명)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하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 과태료(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2] 2호 파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비밀 준수 의무

-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됨
(응급의료법 제40조, 제55조제1항1호, 제60조제3항제2호, 제61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거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 벌칙

- 당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양벌규정 적용)응급구조사 소속의 법인에게도 위의 벌금형이 과해짐

▶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제한

-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다만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수행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응급의료법 제41조, 제42조, 제55조제1항제5호, 제60조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너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 벌칙

- 해당 응급구조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양벌규정 적용)응급구조사 소속의 법인에게도 위의 벌금형이 과해짐

▶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준수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이송하는 환자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 (Pre-KTAS))에 따라 분류하도록 해야 함.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분류 결과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응급의료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함

*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출발 시 1차로 시행하고,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함.

-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 분류 결과를 응급환자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

- 의료기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는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함
(응급의료법 제43조, 제5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더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시정명령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중앙응급의료센터

▶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용 위탁 시 준수사항

-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5])

1.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 구급차등의 등록번호,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 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 운용 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그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 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의 준수 여부
 - 나. 수탁기관 소속 응급구조사가 [별표 13]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여부
 - 다. 법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3.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위탁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이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위탁 구급차등의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러목)

-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탁자, 수탁자 모두 처분 가능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위탁 받은 자(이송업, 대한인명구조단)			

※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이송업자가 차량의 정비 또는 출동 인원의 부족 등 기타의 사유로 이송 출동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



01

의료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응급환자이송업자의 특수구급차가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대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 ▶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 계약을 맺은 응급환자이송업 구급차는 위탁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병원에 위탁된 구급차는 기본적으로 병원의 환자 이송을 주 용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이송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0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체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나요?

- ▶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일정 조건의 사업장은 구급차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서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구급차를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03 응급환자이송업체 구급차로 타 의료기관 간 중복 위탁 가능한가요?

- ▶ 응급의료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 간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구급차 위탁 계약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급차 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 받은 자는 위탁의료기관의 구급차 등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송업체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할 수는 있으나, 특정구급차 1대를 다수의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은 불가능 합니다.

▶ 구급차의 운용신고(통보)

-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의료법에서 정하는 구급차 장비기준 등을 구비하여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시·군·구청에 구급차 운용을 신고
 - ※ 신고 이후에 법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함
(응급의료법 제44조의2, 제45조제2항, 제62조제1항제4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위반 시 처분사항〉

- 미신고(변경신고 포함) 운용 시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 말소 처분 가능(응급의료법 제45조제2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18] 2호 머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 과태료(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마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구급차의 용도 제한

-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응급의료법 제45조,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위반 시 처분사항〉

- 구급차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 말소 처분 가능(응급의료법 제45조제2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서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구급차 내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기준 준수

- 구급차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를 갖추고 상시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함
(응급의료법 제47조,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표 16], 제38조제5항 [별표 17])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서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준수

-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또는 의사, 간호사) 1인 이상과 운전자* 1인이 탑승하도록 하여야 함

* 운전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응급구조사 탑승으로 인정되지 않음
(응급의료법 제48조, 제55조제3항제1호, 제62조제1항제3호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커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과태료(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타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Q & A

01 구급차로 응급환자 이송 중 응급구조사 등이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없는 격벽으로 분리된 앞좌석에 탑승하고 이송하였다면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으로 인정 가능하나요?

- ▶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구급차 운용자 등은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응급구조사 1인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해당 환자가 이송 중 응급환자 또는 응급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급차에 탑승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와 같은 공간에 탑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벽, 차폐막 등으로 별도 공간에 탑승하였다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즉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탑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02 비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종사자 탑승해야 하나요?

- ▶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그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또는 의사나 간호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을 항상 탑승시켜야 합니다.

다만, 구급차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시에는 응급환자가 아닐지라도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여부는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인이 판단할 수 있으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해당 환자가 이송 중 응급환자 또는 응급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환자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 운용 시 응급구조사 등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공통)

이송병원의 수용능력 확인 등

-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운전자와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 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이송을 시작한 즉시 통보
 - 통보내용: 환자의 발생 경위(확인된 경우만), 환자의 연령·성별·상태 (활력 징후 및 의식수준),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도착 예정 시각
 - 통보방법: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01 구급차 운용 시 장시간 대기 발생 시 환자의 인수인계 없이 구급차만 복귀해도 되나요?

- ▶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서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진료 등을 위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의2에 따라 응급 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운전자,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환자 등의 이송 시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수용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기시간을 이유로 환자에 대한 인수인계 없이 환자를 두고 복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 제출, 보존 등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응급구조사 등)

-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작성)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환자를 이송한 때, 출동사항, 응급환자의 증증도 분류결과, 처치내용 등을 3부 작성(응급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서명 반드시 포함)
(응급의료법 제49조제1항, 제55조제1항제1호, 제6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출동 및 처치 기록 3부의 용도

- (용도1)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제출
(용도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
(용도3)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이송처치료 영수증과는 별개임)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터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탑승한 경우)	면허정지 7일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 과태료(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파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응급구조사(또는 의사나 간호사)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제출(구급차등의 운전자)

- 응급구조사 등으로부터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제출받은(용도1 관련)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출동사항, 응급환자의 증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 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 (제출방법은 붙임4 참고)

* 다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 제49조제3항, 제55조제3항제1호, 제6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퍼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전자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과태료(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파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전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01 출동 및 처치기록 작성 시 환자 인수자의 서명이 꼭 있어야 하나요?

- ▶ 응급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응급구조사(또는 의사나 간호사)가 출동한 때에는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 등의 운전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출동 및 처치기록지 서식은 환자인수자의 면허번호, 성명, 서명을 필수기재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 이송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으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시 환자 인수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환자 인수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의 자택 등으로 이송 시, '도착기관 명칭'에는 환자의 자택이라고 기재 후 환자인수자는 '해당없음'으로 처리

○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보관(구급차등의 운전자, 의료기관의 장)

- 구급차등의 운전자(용도1 관련)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용도2 관련) 제출받은 출동 및 처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함
(응급의료법 제49조제4항, 제55조제3항제1호, 제6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고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전자, 진료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과태료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파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전자, 진료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운행기록대장의 전자적 작성·보존

-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존해야 함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을 통해 작성·제출
(응급의료법 제49조제2항 및 제4항, 제55조제3항제1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허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전자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과태료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파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전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운행기록대장의 보존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함(응급의료법 제49조제4항, 제55조제3항제1호, 제62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허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전자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과태료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2호 파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전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구급차 운행기록의 실시간 제출

* 응급의료법 제44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비영리법인: '26.10.14.시행

** 응급의료법 제4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구급차 운전자: '27.10.14.시행)

○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전송

-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운행 정보 확인 및 용도 외 사용 예방 등을 위해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함
- 구급차 운행기록을 조작 또는 위조·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됨(응급의료법 제47조제2항,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처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급차등의 운전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01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시스템에 제출·등록 하였는데도 보관해야 하나요?

- ▶ 아니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존해야 함에 따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모바일 앱(APP) 및 웹(WEB)을 통해 작성·제출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원본으로 인정 및 보관의 의무가 같음됩니다.

※ 단,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 상 본인인증 기능이 도입(2027년)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운행기록대장을 제출한 경우 관리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02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전자적 처리로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작성 및 관리해도 되나요?

-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을 통해 실시간 제출한 구급차 운행기록(GPS)을 토대로 운행기록대장이 자동 생성되고, 해당자료를 기초자료로 구급차 운용자가 내용 검토 및 보완 작성 가능하므로,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 지도의사 선임 또는 위촉

- 구급차의 운용자는(의료기관 제외)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사용하는 경우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의사를 두거나* 선임 또는 위촉
 - 지도의사 수 및 선임 등: 구급차 운용자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 1인 이상

* 구급차등 운용자가 지도의사를 고용한 경우
(응급의료법 제52조,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지도의사의 업무

-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 ▶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위반 시 처분사항〉

○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보목)

처분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송업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Q & A

01 구급차 운용자가 보건소 또는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인 경우 지도의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 보건소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보아 지도의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지역보건법」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 ▶ 부속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포함되므로 지도의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02 응급의료법 제44조제1항제1호이자 제2호 구급차 운용자에 해당하는 국립병원의 경우 지도의사 선임 의무가 있나요?

- ▶ 국립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므로 지도의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X

구급차 운용 신고(통보)

▶ 관련 규정

- 응급의료법 제44조의2, 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 용어
 -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는 “통보”, 의료기관, 대한인명구조단, 다른 법률에 의해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신고”한다고 표현
 - 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구급차에 대해 “허가증”을 발급하되, 허가 및 신고 후 운용 가능

▶ 신고절차

(별도의 통보절차가 있는 119 구급차 등을 제외하고 통보의 경우도 아래 신고절차를 준용)

가. <최초 신고(통보)>

- 1) 신고(통보) 대상: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의해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이송업, 대한인명구조단
- 2) 신고 주체: 구급차 운전자

의료기관의 구급차 신고 주체 관련

- 의료기관이 소유하지 않은 구급차로써 응급환자이송업, 대한인명구조단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구급차는 **의료기관의 신고대상이 아니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신고확인증 발급, 대한인명구조단 자체 신고), 의료기관 직접 소유의 구급차만 신고
- 의료기관이 리스차량으로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 운용하는 의료기관이 신고.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원부와 함께 해당 자동차 리스업체와의 계약기간, 계약차량, 계약내용이 명시된 리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법인 또는 의원)이 운용하는 리스차량의 권리관계를 관할 관서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신고 기한

-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 허가 후 10일 이내)

※ 개조차의 경우 개조 완료 후 10일 이내

4) 신고처

- 자동차 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의 보건소

※ 단, 대한인명구조단의 경우 본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와 타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신고를 대행토록 할 수 있으나, 이는 지자체간 협의 결과에 따름

의료기관의 구급차 신고처 관련 예의

〈사례 1〉

- 개인(의사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 명의로 구급차를 등록하게 되어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로 설정되어 구급차를 실제로 운용하는 지역(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과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

〈예시〉

의사A가 개설한 B병원(전라북도 전주시)이나 의사A의 주민등록지는 경기도 수원시인 경우 B병원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자동차 등록 시 소유자인 의사A의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수원시를 사용본거지로 지정하게 됨

- (적용 방법) 개인(의사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해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의료기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함

〈사례 2〉

- 개인(의사 등)이나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자(법인) 명의로 리스한 자동차를 등록하게 될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에 따라 리스사업자 등록지가 사용본거지로 설정되어 구급차를 실제로 운용하는 지역(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과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

- (적용 방법) 리스한 차량의 경우에 한해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의료기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함

* 위 두 사례의 경우 모두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을 통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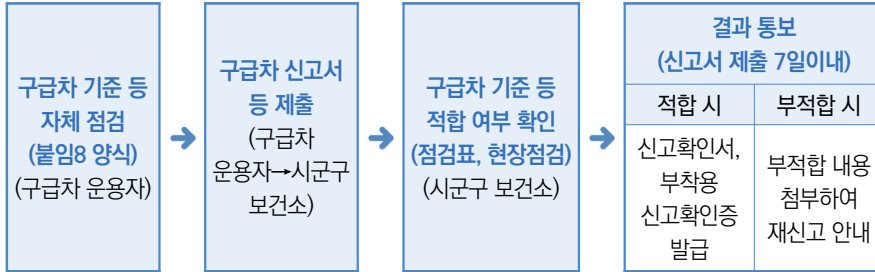
5)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별지 제15호의5서식]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붙임6 양식])

- 신고일 1주일 이내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원부

6) 처리절차



7) 세부처리 절차(보건소 담당자)

- ① 구급차 신고 문의가 들어온 경우 동 지침 및 점검표를 배부, 사전 준비 진행
- ② 신고서 등이 제출되면 보건소 담당자가 점검 구급차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의료장비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 인력 등을 동반하여 점검
- ③ 의료장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동 지침을 참고하되, 기능을 위주로 판단
- ④ 의료장비 돌려쓰기, 점검 용 임시 대여 등을 금지하기 위해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조치 필요 (각 보건소별로 별도의 조치 가능)

예시1) 보건소 소유의 RFID리더기를 이용하여 전자태그 부착

예시2) “관리스티커” 제작 및 부착

관리번호	세종-2014-1	세종-2014-1	관리번호
품명	자동제세동기	자동제세동기	품명
일련번호	DLKIJOI321	DLKIJOI321	일련번호
구매일	2013-1-1	2013-1-1	구매일
제조사	(주)ABCD	(주)ABCD	제조사

의료장비에 부착

보건소 보관

8) 기타

- 최초 신고확인서 발급 시 “변경신고”에 대해 반드시 안내

나. <변경 신고>

1) 신고 대상: 신고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구급차 사용본거지 변경
- 구급차의 소유자 변경
- 구급차 구분(일반 ↔ 특수)의 변경
- 구급차 운용자의 단순 상호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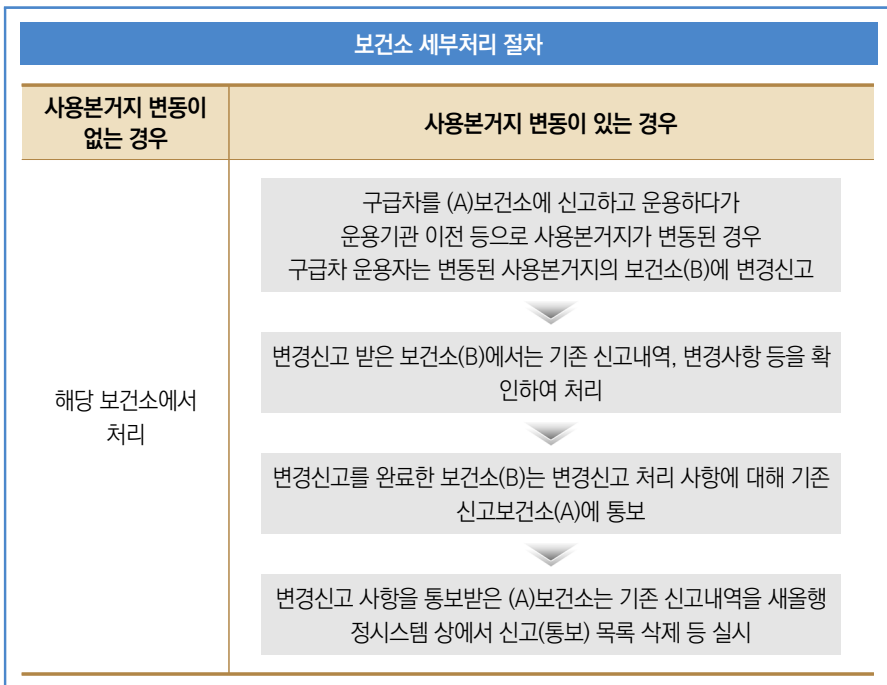
2) 신고 주체: 구급차 운전자

3) 신고 기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4) 신고처

○ 자동차 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의 보건소

- 구급차 사용본거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고, 그 외는 기존에 신고한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





01 응급환자이송업 구급차 중고거래 시 변경신고 주체는 누구인가요?

- ▶ 의료기관 구급차의 중고거래가 완료되어 구급차 등의 소유자 변경 시 '새로운 구급차 운용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 구급차 운용자는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기존에 신고한 시·군·구 보건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거래기간 동안 구급차 운용자가 아닌자가 구급차를 운용하거나, 구급차 운용자가 정해진 후에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를 운용하는 것은 불법

5)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5항 [별지 제15호의9서식]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붙임9 양식))
-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서 1부

다. <재발급>

1) 재발급 대상: 신고(통보)확인서 발급 후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잃어버린 경우

2) 재발급 기관: 기존의 신고(통보)확인서 발급 기관

3)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 [별지 제15호의10서식]
재발급 신청서 (붙임10 양식)
- ※ 기타 필요서류
 -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받으려는 (부착용) 신고(통보) 필증
 -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라. 〈말소신고〉

1) 말소신고 대상: 신고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응급의료법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2) 신고 기관: 기존의 신고(통보)확인서 발급 기관

3) 신고 주체: 구급차 운용자

4) 신고 기한: 말소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5)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별지 제15호의11서식]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XI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 관련 규정

- 응급의료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구급차 기준 규칙 제8조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가. 처리기관

-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구급차 기준 규칙이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신청인인 법인 또는 개인이 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시·도의 시·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에게 접수하고, 시·도지사가 처리
- * 해당 기준은 허가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모목)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지 17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7 표준 양식 참고]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무소 및 분사무소(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 사무소(이하 '기본사무소'라 함) 및 분사무소는 모두 동일 시·도 내에 위치하여야 함 •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해당 분사무소는 이송업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무실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함
영업지역(시·군·구 단위)	•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 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1조제2항)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급차의 총대수·종별·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구급차 차량별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종별 및 구급차 구분 (특수/일반), 연식(운행연한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연식)을 기재
지도의사의 선임현황	- 지도의사의 선임 또는 위촉 관련 사항을 기재 - 지도의사 직접 고용시 고용관계 서류 - 지도의사 위촉시 소속기관, 연락처 등을 기록하고, 자격증 사본을 제출 ※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해당 지도의사에게 위촉 사실을 확인

- 자본금과 구급차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영업 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 법인의 경우 다음 서류 각 1부
 - 기존 법인: ① 정관, ② 임원의 명부, ③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규 설립 법인: ①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② 발기인 또는 설립 사원의 명부, ③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 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허가신청 시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구급차 기준 규칙 제8조 [별표 3])

	1. 시설 기준
가. 사무실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세부기준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허가받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함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가능 〈확인 서류〉 ○ 매매·임대 계약서 등 - 허가를 받은 대표자 또는 법인 등의 명의여야 함 - 임대 시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여 종료 시에 재확인 ○ 임대외의 경우, 점검시 임대차 현황과 맞는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료 송금영수증을 확인 ○ 사무실 중복 등록 확인이 필요할 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무실에 대한 ‘등록 사항열람’을 실시하여 확인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③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만,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이송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가능 (마) 사무실은 다른 이송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송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 전화 등 출동요청 접수 등이 가능한 통신설비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 (바) 사무실은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과는 별도로 있는 공간으로 사무실 공간을 휴게실 및 대기실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허가기준 미충족으로 간주 (사) 이송업 사무실은 이송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아) 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1. 시설 기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2)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등의 기록을 전자적 작성·관리할 수 있는 업무 관련 설비
나.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 소형 1대당 13㎡ 이상 - 중형 1대당 23㎡ 이상 -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의 바닥을 포장(鋪裝)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세부기준 • 차고라 함은 구급차가 운행을 마치고 돌아와 다음 운행 이전까지 대기 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하는 공간을 말함 • 이송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받은 차고에 소속 구급차가 주차 또는 대기토록 하여야 함 〈확인 서류〉 ○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 - 허가를 받은 대표자 또는 법인 등의 명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 소유 외의 차고시설을 1년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볼 것 - 임대차의 경우, 점검시 임대차 현황과 맞는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료 송금영수증을 확인 ※ 담당공무원은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구역인지 현장 확인 실시 (허가 이후 주택가, 도로가 등에 불법주차로 민원 다수 발생)
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세부기준 • 소속 응급구조사와 운전사 총원의 1/3이상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의미 • 휴게실 및 대기실은 사무실이나 교육훈련시설과는 별도로 있는 공간으로 휴게실 공간을 사무실이나 교육훈련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허가기준 미충족으로 간주
라.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응급처치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세부기준 • 소속 응급구조사와 운전사 총원의 1/3이상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의미하며, 응급구조·응급처치 교육장비 등을 보유해야 함

1. 시설 기준

	교육훈련시설은 사무실이나 휴게실 및 대기실과는 별도로 있는 공간으로 교육 훈련시설 공간을 사무실이나 휴게실 및 대기실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허가 기준 미충족으로 간주
마. 통신시설	- 사무실 내에는 응급의료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춰야 한다. - 구급차에는 응급의료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 설비를 갖춰야 한다. -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보유구급차 기준

응급의료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특수구급차 5대 이상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신규로 받기 위해 신청자가 구급차를 구매하여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소”에서 허가 진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예: 임시허가증 등)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 응급의료법 상 임시허가 근거가 없고 임시허가 시 허가 전 불법 운용 등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상기 요청시 허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해주되, 자동차 등록 후에 허가가 완료되면 다시 한 번 허가 세부사항 (허가 받은 구급차 세부내역 등)을 통보해 주고,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 사실을 통보하여 불법으로 구급차가 운용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담당공무원은 각종 구급차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각 차량별 장비기준 등을 직접 확인 (필요시 해당 지역 응급의료지원센터 직원 협조)
-----------------------------	---

3.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u>2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u>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법인: 재무상태표, 자본금 납입 증빙자료 등, 개인: 영업용자산명세서, 예금잔액 증명서 등) ☞ 자본금의 범위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보유 구급차 및 현금성 자산 등 순 자산을 의미
----------------	---

4. 인력기준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세부기준. 인력기준의 산정 예시 ① 허가받은 특수구급차가 5대인 경우: 운전자 8명, 응급구조사 8명 $\Rightarrow$ 허가받은 특수구급차 5대 $\times$ 0.8 $\times$ 운전자 2명(응급구조사 2명) = 8명 ② 허가받은 특수구급차가 8대인 경우: 운전자 12명, 응급구조사 12명 $\Rightarrow$ 허가받은 특수구급차 8대 $\times$ 0.8 $\times$ 운전자 2명(응급구조사 2명) = 12.8명 ③ 허가받은 특수구급차가 5대이고, 간호사(이송업체에 고용되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를 2명 고용한 경우: 운전자 8명, 응급구조사 6명 $\Rightarrow$ 본래 응급구조사를 8명 고용하여야 하나,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 수행 시에는 대체 가능 $\Rightarrow$ 세부기준. 고용 사실의 입증과 확인 - 고용계약서, 자격·면허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이송업체와 개인 간의 고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이송업체가 직접 소명 - 점검시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월급 지출 내역, 기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 등 확인) - 점검시 응급의료지원센터 등을 통해 업체별, 응급구조사 별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근무 사실 확인
--	---

▶ 관련 처벌 조항

-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모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01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기준 중 '자본기준 2억원'이라 함은 상시 보유 기준인지 최초 허가기준인가요?

- ▶ 이송업자가 일정 기준이상의 자본금 보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급자동차 및 사무실등의 시설 외에 종업원에게 지급할 봉급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화할 수 있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한 것입니다.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1995. 7. 31., 제정] 제정이유
응급의료법 제51조제7항은 이송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금 2억 원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반드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시 시간제(파트타임) 근무자의 인력 기준은?

- ▶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에서 이송업체가 직원 채용 시 고용계약서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가입 확인 등을 하도록 명시한 취지는 응급구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 적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4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에 대한 근무 인력을 고용하였다면 나머지 16시간의 근무인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고용 사실의 입증과 확인

- 고용계약서, 자격·면허 사본, 사회보험 가입 확인 등 이송업체와 개인 간의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민간이송업체가 직접 소명
- 점검시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월급 지출 내역, 기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역 등 확인
- 점검시 응급의료지원센터 등을 통해 업체별, 응급구조사 별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근무 사실 확인

03 응급환자이송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처분이 있나요?

- ▶ 이송업자가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로목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모목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허가 받은 지역 외에서 환자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하여 올 수 있나요?

- ▶ 응급환자이송업체의 미허가지역 영업 판단은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며, 허가받은 시·도에서 ‘환자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타 시·도의 ‘환자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하기 위해 허가받은 시·도를 벗어나 응급환자이송업을 할 경우 응급의료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가. <허가증 발급>

1) 허가증의 발급 목적

- 구급차 신고제 도입에 맞춰 허가제에 의해 운용되는 응급환자이송업 구급차에 대해서도 구급차 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부착용 허가증은 구급차 앞면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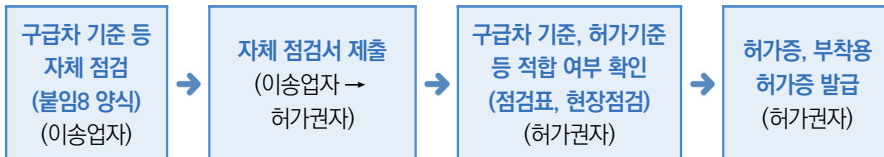
2) 발급 대상

- 응급의료법 제51조에 의해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
- 기존에 허가받은 모든 구급차별로 부착용 허가증 발급

3) 발급처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관할하는 시·도

4) 처리 절차



5) 기타

- 구급차 기준 규칙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준수 여부 철저히 확인

*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 이상의 구급차마다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둬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 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변경 허가>

- 1) 변경 허가신청 및 신고 대상: 허가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허가 사항	신고 사항
1. 영업지역의 변경 2. 구급차의 증감*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의 명칭 및 위치** 변경

* 구급차 증차 시 이에 따른 관련 차고 면적 추가 확보 여부 및 인력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매매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받아 변경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2) 변경 허가 신청 및 신고 주체: 구급차 운전자

- 3) 변경 신고 기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4) 변경 허가신청 및 신고처: 관할 시·도

- 5)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20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신고서))
- 허가증 1부
- 변경내역서 1부

다. <재발급>

- 1) 재발급 대상: 허가증 발급 후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잃어버린 경우

- 2) 재발급 기관: 관할 시·도

3) 구비서류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 [별지 제21호서식] 재발급 신청서

※ 기타 필요서류

- 헤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받으려는 (부착용) 허가증
-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관련 처벌 조항

-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모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XII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 점검

▶ 정기적인 운용상황과 실태 점검(응급의료법 제50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시·도별 자체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1회 전국 점검을 실시, 이 경우 그 시기와 방법은 별도 공문에 의함

운용상황	종류	실태
• 신고(통보)필증 부착 여부 및 미신고(미통보) 차량 운용 여부 • 구급차 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여부 • (의료기관의 위탁을 받은 이송업체의 경우)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신고(통보)된 구급차	• 구급차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기준 준수 여부 • 구급차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 장비 등 기준 준수 여부 • 기타 변경신고(통보)사항 여부
• 허가필증의 부착 여부 및 미허가 차량 운용 여부 • 구급차 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여부 • 차고지 운영 및 주차 실태 확인 • (의료기관 위탁을 받은 이송업체)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허가업체 구급차	• 구급차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기준 준수 여부 • 구급차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 장비 등 기준 준수 여부 • 인력기준 준수 여부 • 기타 변경허가·변경신고사항 여부

▶ 점검 방법

- (1단계 점검대상 확정) 점검대상 확정 및 시스템 회원가입
- (2단계 자가실태점검) [붙임8양식]을 활용하여 자가실태점검 실시
- (3단계 현장점검)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기관 현장점검 실시
- (4단계 처분시행)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처분절차 진행

▶ 관련 처벌 조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 점검 시 구급차의 관리기준 [별표 17] 등 미비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2호 노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45조제3항)
- 조회 결과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송업체에 소명을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용도 외 사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붙임 1 구급차 부착용 이용안내(안)

구급차 이용안내

이송처치로는 아래 기준표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탐승하신 구급차는 ○○○도에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이송단(허가번호 : ○○○ 호) 소속

특수구급차(차량번호) 입니다.

요금안내

구 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40,000원	26,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500원/1km	1,000원/1km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95,500원	63,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2,300원/1km	1,500원/1km
공통	할증요금 (평일 18:00~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6,000원/10분	

대기요금 산정 방식

- 병원에 도착하여 30분을 초과한 때부터 대기요금을 부과하며, 초과시간 10분 미만은 절사하여 같고 10분 단위로 올림

< 대기요금 산정 방식(예시) >

대기시간	대기비용
~30분	-
30분 1초~40분	6,000원
40분 1초~50분	12,000원
50분 1초~60분	18,000원
60분 초과 시 매 10분당	6,000원씩 추가



선박을 통한 구급차 이송 시 선박 이용 구간 요금 산정 방식

- 구급차 이송 시 선박을 통한 이송 구간은 이송시간이 10분이 도달하는 때마다 6,000원의 요금이 추가되며, 10분 미만의 시간은 절사

< 선박요금 산정 방식(예시) >

선박 이용 시간	비용
~9분 59초	-
10분~19분 59초	6,000원
20분~29분 59초	12,000원
30분~39분 59초	18,000원
40분 초과 시 매 10분당	6,000원씩 추가

이송처치로 안내

▶ 이송처치로는 구급차 내에 장착된 미터기에 의해 계산되며,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이송처치로는 "환자가 실제로 탐승하여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아래의 경우 등과 같이 이송처치로 외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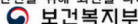
- 왕복, 시외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불법
-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의약품 사용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불법
- 카드수수료, 보호자 탐승료, 통행료 등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불법

- 환자 이송 시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환자 이송 종료 시 이송처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하니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역 : 운행거리, 기본요금, 추가요금, 할증요금, 대기요금, 선박요금 등
- 구급차에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응급환자 이송 시에는 필수 탐승), 탐승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작성한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탐승하신 구급차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은 ○○○도 ○○과(전화)○○-○○○○-○○○○로 연락 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붙임 2 이송처치료 영수증 양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송처치료 영수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영수증번호		결제방법	[] 현금 [] 카드 [] 기타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번호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		운용기관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성명	
차량 주행 거리	Km	구급차탑승시간	YYYY-MM-DD HH:MM
		기관도착시간	YYYY-MM-DD HH:MM
		환자인계시간	YYYY-MM-DD HH:MM

이송처치료 세부내역

구 분		①기본요금 (10km 이내)	②추가요금 (10km 초과 시)	③할증요금 (주말 야간 및 토요일 · 일요일·공휴일 이용 시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④대기요금 (기정도착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 산정)
법 제4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일반 구급차	[] 40,000원	[] ____km × 1,500원	[] 8,000원 [] ____km × 300원	[] 대기시간 ____분 [] 단위 ____ × 6,000원
	특수 구급차	[] 95,500원	[] ____km × 2,300원	[] 19,100원 [] ____km × 480원	[] 대기시간 ____분 [] 단위 ____ × 6,000원
법 제4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 26,600원	[] ____km × 1,000원	[] 5,320원 [] ____km × 200원	[] 대기시간 ____분 [] 단위 ____ × 6,000원
	특수 구급차	[] 63,600원	[] ____km × 1,500원	[] 12,720원 [] ____km × 300원	[] 대기시간 ____분 [] 단위 ____ × 6,000원
이송처치료 총액(①+②+③+④)					원
이용자명		(서명)		이용자 생년월일	
납부자명		(서명)		이용자와의 관계	
이송 중 처치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송기관명

직인

[합동으로 적용 기준]

※ 월요일 야간: 18:00 ~ 다음날 09: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전일(00:00~24:00)

[대기시간 적용 단위]

대기시간	적용 단위	대기시간	적용 단위
~30분	0	30분 1초~40분	1
40분 1초~50분	2	50분 1초~60분	3
60분 1초~70분	4	70분 1초~80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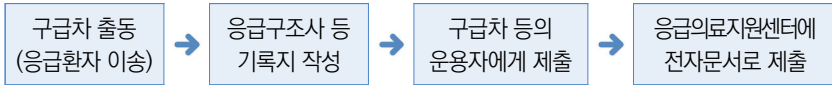
※ 이상 10분 단위로 적용 단위 1회 증가

210mm×297mm[적상지(80g/㎡) 또는 등질지(80g/㎡)]

* 부정분류 : 1. 수액제제, 2. 에피네프린, 3. 아미오돈론, 4. 주사용 비아크성통제, 5.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6.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7. 흡입용 기관확장제, 8. 소독제

붙임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제출방법

○ 제출 체계



○ 제출 대상

- 응급의료법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운자)

○ 제출 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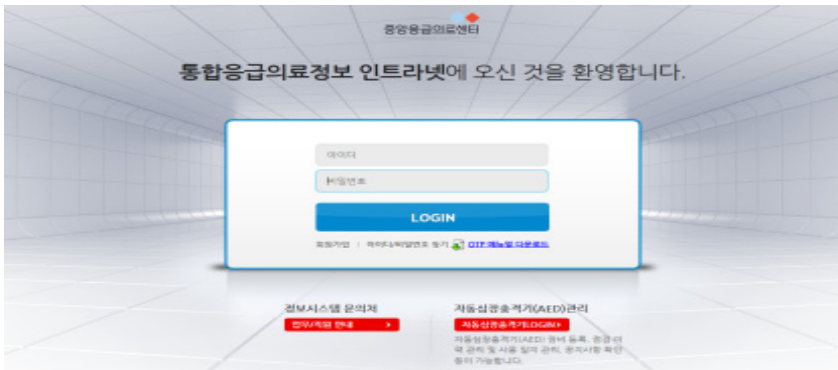
- 매월 작성된 '출동 및 처치기록지'는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제출 방법: 전자제출 방식(시스템 등록)

-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사용자 인증 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에 직접 자료를 등록 제출하는 방식
-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이용시 인트라넷을 통해 가입, 회원가입시 이용시스템(인트라넷,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두 개 선택

〈전자제출 방식(시스템 등록) 방법〉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사용자 인증 후 로그인하여 정보를 등록함



- 회원가입: 처음 방문자는 회원가입 후 인증을 받아야 사용 가능 함
 - ① 약관동의: 이용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확인 및 체크 후 '동의'
 - ② 본인인증: "I-PIN 또는 안심본인 인증"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하기'
 - ③ 회원정보 입력: 인증 후 회원정보입력 화면에 모든 항목 기입 후 '회원가입' 클릭
 - 사용자명은 입력 담당자로 하며, 기관은 [기관검색] 버튼을 활용하여 해당 소속기관을 선택 (소속기관이 없을 시,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연락하여 기관등록 요청)

※ 시스템 이용자는 반드시 개인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함(1인 1계정 사용 원칙)

• 승인 요청 및 문의

- 승인 요청 및 문의: 응급의료지원센터(아래의 연락처 참고)

※ 계정 승인 후 사용 가능하며, 빠른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요청

- 시스템 오류 문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화팀(연락처: 02-6362-3577)

※ 「통합정보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은 각각의 구글 OTP 등록이 필요함.
각 사이트별 "매뉴얼 다운로드" 참고.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인트라넷 가입시 동일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후 OTP 발급

• 전자적 제출 방법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http://air.nemc.or.kr>)」

출동 및 처치 기록지 관리 > 출동 및 처치기록지 등록관리

〈출동 및 처치기록지 등록방법〉

I. 기본정보

① 차량검색: 구급차 차량 번호는 검색하여 입력

■ 기본정보

등록구분	직접제출	이송차량		검색
------	------	------	----------------------	-----------------------------------

② 조회구분 선택 후 검색

- 현재 운행중인 차량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제출 시 현황 정보에서 조회
- 과거 보유했던 구급차량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제출 시 이력 정보에서 조회

③ 차량번호 목록: 제출하고자 하는 차량번호 선택

차량번호		구급차 운용기관	미래로병원	조회구분	☒ 현황 ☐ 이력	검색
------	----------------------	----------	-------	------	--	-----------------------------------

선택	차량번호	운행기관	구분	연락처	운행구분	시작일	종료일
☒			특수구급차	0	운행	2015-04-23	9999-12-31

II.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① 요청 및 운행과정 일시 등록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2025년 이전 기록지 입력은 출동 및 처치기록지(2024년)까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요청연월일 * 2026-05-20 12시 00분 출동연월일 * 2026-05-20 12시 00분 현장도착 연월일 * 2026-05-20 12시 00분 이송개시 연월일 * 2026-05-20 12시 00분 기관도착 연월일 * 2026-05-20 12시 00분 이송종료 연월일 * 2026-05-20 12시 00분	요청처(기관) * 이송처 종류 * ☐ 병원 ☐ 의료기관 외 각종 이송처 주소 * 출동지명 * 도착기관명 * 이송종류 * ☐ 환자 ☐ 의약품 ☐ 1급 응급구조사	신청자 * 신청자 직책 * 신청자 연락처 * 신청자 이메일 * 신청자 직책 * 신청자 연락처 * 신청자 이메일 *

- 요청 연월일: 구급차 출동 요청을 받은 연월일 및 시각 작성
 - 출동 연월일: 구급차가 출동을 시작한 연월일 및 시각 작성
 - 현장도착 연월일: 구급차가 출동 장소에 도착한 연월일 및 시각 작성
 - 이송개시 연월일: 현장(보내는 기관)에서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출발한 연월일 및 시각 작성
 - 기관도착 연월일: 기관(시설)에 환자를 태우고 도착한 연월일 및 시각 작성
 - 이송종료 연월일: 기관(시설)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한 연월일 및 시각 작성
- ※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앞에 주차되어 '요청-출동-현장도착 일시'가 차이나지 않을 수 있으며, 운행과정 기록(입력)으로 과거시간 입력 시 오류 메시지 발생

② 이송의 종류 및 요청·도착 기관 등록

- 요청자(기관): 최초 구급차를 요청한 성명(기관명)과 연락처 작성
 - 기관등록은 검색하여 등록하며, 현장(개인, 택시 등)에서 요청 시에만 직접 작성 가능
- 이송의 종류: '현장이송'(출발지가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간 이송'(출발지와 도착지 모두 의료기관인 경우), '미이송'(이송거부, 이송중단, 이송 불필요 등의 경우에 선택하며, 미이송 사유 작성), '기타'(도착지가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중 선택
- 출발지 주소: 이송을 위해 구급차가 도착한 현장의 주소(다만, 주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요 도로 또는 건물명 등을 작성)
- 출발지 명칭: 이송을 위해 구급차가 도착한 현장의 기관명을 작성
- 도착기관 명칭: 환자가 이송된 기관(시설)의 명칭을 검색하여 작성
 - 도착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기타'자택, 요양원, 헬기인계점, 장례식장 등' 선택

③ 이송거리: 구급차에 이송 환자 탑승 후부터 도착 기관(시설)까지의 거리(km)를 작성

④ 인계·인수자, 지도의사 및 통신방법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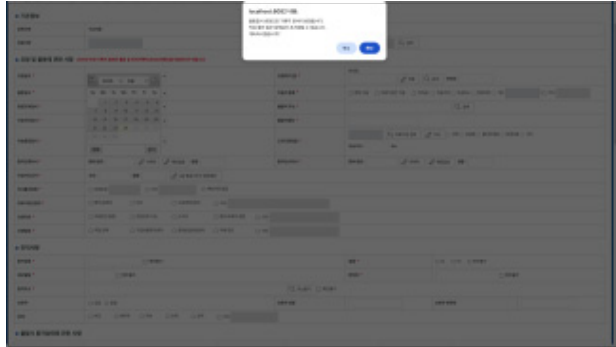
- 환자인계자: 환자를 보내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종별과 면허(자격)번호, 성명을 작성
 -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인계자가 없을 시 '그 밖의 인계자'를 선택 후 '인계자 없음' 기입
- 환자인수자: 환자를 받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종별과 면허(자격)번호, 성명을 작성
 -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인수자가 없을 시 '그 밖의 인수자'를 선택 후 '인수자 없음' 기입
 - 의료기관 이송 시 면허(자격)번호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종별 선택 후 면허번호에 아라비아 숫자 '0000'을 기입, 의료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송 시 '그 밖의 인수자(인계자)'를 선택하며 면허번호는 '해당없음'으로 자동 입력됨
- 이송지도의사: 이송 중 실제 의료지도를 수행한 의사의 소속과 성명을 작성
 -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에 의거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 선택
- 의사통신방법: 이송지도의사와의 통신방법을 작성
 - 전화(전화번호 기재), 무전기 및 기타로 구분하며, 2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로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⑤ 의료기관 선정

- 의료기관선정자: 이송의료기관을 선정한 자로, '환자/보호자', '의사', '구급대(이송자)',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 선정이유: 이송의료기관을 선정한 이유로, '치료받던 병원', '전문치료가능', '근거리', '환자/보호자 원함',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 선정방법: 이송의료기관을 선정한 방법으로, '직접연락', '구급상황관리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자체판단',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 *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의 전원 지원을 통해 결정된 경우 선택

※ 출동 및 처치기록지 양식 전환

- 2026. 7. 13. 기준으로 출동 및 처치기록지 양식이 개정됨
- 출동일시를 기준으로 개정 전·후로 양식이 전환됨
- 기록지 전환 이후에는 작성 중인 내용이 초기화되므로 확인 필요



III. 인적사항

1

인적사항

환자성명 * ☐ 확인불가

성별 * ☐ 남 ☐ 여 ☐ 확인불가

생년월일 * ☐ 확인불가

연락처 * ☐ 확인불가

환자주소 * ☐ 확인불가

보호자 * ☐ 확인불가

관계 * ☐ 확인불가

① 환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 환자성명: 환자 성명을 작성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불가' 선택
- 성별: 환자 성별을 작성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불가' 선택
- 생년월일: 환자 생년월일을 작성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불가' 선택
- 연락처: 환자 연락처를 작성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불가' 선택
- 환자주소: 환자 주소를 작성(주소찾기)하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불가' 선택
-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보호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
- 관계: 환자와의 관계를 작성
 - '부모', '배우자', '자녀', '친척'(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이나 집단, 친족과 외척), '친지'(서로 잘 알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IV.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1	분류결과 *	☐ 소생 ☐ 긴급 ☐ 응급 ☐ 준응급 ☐ 비응급	발병여부 *	☐ 있음 ☐ 없음	의식수준 *	☐ A ☐ V ☐ P ☐ U
	최초 Pre-KTAS *	코드검색	KTAS 코드(병명)		☐ 1 ☐ 2 ☐ 3 ☐ 4 ☐ 5	
	의심질환명 *					
	생체징후 *	혈압: / mmHg 맥박수: 회/분 호흡수: 회/분 체온: °C 산소포화도: %				
2	출발시 처치사항 *	1. 기도: ☐ 없음 ☐ 기도개 ☐ LMA ☐ 기관지삽관 ☐ 기관절개 ☐ 기타				
		2. 호흡: ☐ 없음 ☐ BVM ☐ 인공호흡기 ☐ 비환 ☐ 인공막소식 ☐ 산소통기 ☐ 기타				
		3. 순환: ☐ 없음 ☐ 심폐소생술 ☐ 인-리듬 ☐ 펌프 ☐ 혈액 ☐ 산소포화도 ☐ 3분도심전도 ☐ 12분도심전도 측정 ☐ 혈액화학분석 ☐ 혈액질환명				
		4. 약물: ☐ 없음 ☐ 혈액검사(수액량/간염) / ☐ 혈액검사(수액량/간염) / ☐ 혈액검사(수액량/간염) / ☐ 혈액검사(수액량/간염) /				
		5. 교정: ☐ 없음 ☐ 양주 ☐ 적주 ☐ 양지 ☐ 적지 ☐ 기타				
		6. 기타: ☐ 없음 ☐ 비외상(燙傷, L, tubed) ☐ 도뇨관 ☐ 음낭절제 ☐ 기타				
	기타 소견 및 처치					

① 환자 중증도 및 상태

- 분류결과: 환자의 중증도·긴급도를 나타내며,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 ‘비응급’으로 구분하여 선택

※ 최초 Pre-KTAS 분류 시행 시 중증도에 따라 분류결과는 자동으로 생성됨

- 최초 Pre-KTAS: ‘코드검색’을 통해 Pre-KTAS 분류

- ‘소생’(심정지, 중증 외상 등 즉각적인 처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
- ‘긴급’(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즉각적인 처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
- ‘응급’(호흡기 질환, 급성복통 등 긴급치료 필요, 향후 응급상태로 발전 가능),
- ‘준응급’(단순골절, 열상 등 약간의 통증 및 불편감, 생명이나 사지기능의 위협이 적음)
- ‘비응급’(감기, 단순발열, 가벼운 타박상 등 만성적이거나 경미함)

- 질병여부: ‘질병’(질병에 의한 경우), ‘질병외’(각종 사고에 의한 경우 등) 중 선택

- 의식수준: A(Alert) 명료, V(Verbal response) 목소리에 반응, P(Pain response) 통증자극에 반응, U(Unresponse) 반응없음으로 구분하여 선택

- 의심질환명: 이송 당시 환자의 병명 또는 주증상(코드검색)을 작성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코드 기준으로, 검색 불가 시 ‘기타’ 선택 후 작성

- 생체징후: 환자의 혈압(수축기/이완기), 맥박수 및 호흡수(분당), 체온(℃) 및 산소포화도(%)를 작성

※ 생체징후 중 측정 불가인 항목은 ‘-1’로 입력, 심정지 또는 도착지 사망(DOA)인 경우 ‘0’으로 입력

- 환자 증상: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표기하며, 중복 작성 가능함. 외상의 경우 () 안에 손상 부위를 기재

- 과거력: 환자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의 종류나 상태 등 기재

② 출발 시 처치사항

- 출발 시 처치상태: 출발할 당시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실시한 처치 및 투약 상태 등을 확인하여 작성(약품명 및 수액명은 줄임말이 아닌 전체이름으로 작성)

※ 주의: 정맥로(1·2·3)의 잔여량은 확인한 시점의 잔여량을 작성(약품의 규격이나 투여량을 적는 것이 아님)

- 기타 소견 및 처치: 환자와 관련된 기타 소견 및 처치가 있거나 지도의사에게 지도받은 경우 상세 내역을 작성

V.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1	분류기준 *	☐ 초생 ☐ 전생 ☐ 중생 ☐ 준중생 ☐ 미발생				이송장(차량) Pre-KTAS		코드검색	의사번호 * ☐ A ☐ V ☐ P ☐ U
	생체정보	월령: / /	성명:	백색수:	회생:	호흡수:	주행:	체온: °C	산소포화도: %
2	이송도착지 정보사항 *	☐ 상용	1.기차: ☐ 없음 ☐ 기차역 ☐ LMA ☐ 기차역내광 ☐ 기차역광 ☐ 기타	☐ 상용					
			2.호출: ☐ 없음 ☐ BSM ☐ 민원보호구역 ☐ 비관 ☐ 안전보호구역 ☐ 안전통행역 ☐ (차량번호)	☐ 상용					
			3.상황: ☐ 없음 ☐ 광역보호구역 ☐ 도시내방 ☐ 철도 ☐ 역역 ☐ 안전보호도 ☐ 30도당당도 적용 ☐ 광역보호도 ☐ 광역제정역	☐ 상용					
			4.역종: ☐ 없음 ☐ 광역보호(주변방역) ☐ () / () ☐ 광역보호(주변방역) ☐ () / () ☐ 광역보호(주변방역) ☐ () / () ☐ 광역통행역	☐ 상용					
			5.교량: ☐ 없음 ☐ 중부 ☐ 좌측 ☐ 상지 ☐ 하지 ☐ 기타	☐ 상용					
			6.가터: ☐ 없음 ☐ 비터(非排氣管, L tube) ☐ 노노관 ☐ 배출장치 ☐ 송출장치 ☐ 기타	☐ 상용					
기타 추가 및 처치									

- ① 이송 중 환자 중증도 및 상태
-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과 동일
- ② 이송 중 처치 사항
- 이송/도착 시 처치상태: 이송 중 실시한 환자 처치 및 투약 등의 내용을 작성 (약품명 및 수액명은 줄임말이 아닌 전체이름으로 작성)
 - ※ 주의: 정맥로(1·2·3)의 잔여량은 확인한 시점의 잔여량을 작성(약품의 규격이나 투여량을 적는 것이 아님)
 - ※ "상동": 출발 시 처치상태와 동일한 경우 " 상동" 버튼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 기타 소견 및 처치: 환자와 관련된 기타 소견 및 처치가 있거나 지도의사에게 지도받은 경우 상세 내역을 작성

VI.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사항

1

이슈창상 및 이슈자 등에 관한 사항

구분

소속기관

종형(직장, 자적, 권외)

번호
(유목, 자적, 권외)

성명

이슈자명		☐ 특수구급차 ☐ 일반구급차 ☐ 기타		
출원자 *	☒ 병원 * 본도시 소속기관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간호사 ☐ 의사 ☐ 법률 ☐ 기타		
작성일자 *	☒ 병원 * 본도시 소속기관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간호사 ☐ 의사 ☐ 법률 ☐ 기타		* 신청을 받으시 확인해 주시길 Pre-AT&S 구역 () 예 이슈부서 () 예 ☐ 아니요

2

이슈자명

출원자

작성일자

- ① 이송차량, 운전자, 동승자 정보
- 이송차량: 소속기관명, 차량의 구분(특수, 일반, 기타), 차량번호를 작성
 - 시스템 입력 시 기본정보를 선택하면 '이송차량' 정보 자동 작성
 - 운전자: 이송차량 운전자의 소속기관명, 자격(면허) 구분과 번호를 적고 성명을 작성(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함)
 - 작성자: 이송차량 동승자(작성자)의 소속기관명, 자격(면허) 구분과 번호를 적고 성명을 작성(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함), Pre-KTAS 교육이수 여부 작성
(‘동승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만 작성)
- ※ “삼동”: 이송차량 소속기관명과 동일한 경우, “ 삼동” 버튼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②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저장

- 저장: 모든 필수항목(★) 작성(입력) 완료 후 “저장” 버튼을 클릭 시 제출 완료

〈출동 및 처치기록지 수정·삭제 방법〉

※ 전자문서로 제출된 출동 및 처치기록지는 등록 후 7일 이내에만 수정·삭제 가능

- 등록한 자료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등록관리 메뉴에서 현황 목록을 조회 후 선택하고, 정보를 수정한 다음 ‘수정·삭제’ 버튼 클릭
 - 등록 후 7일 이후 ‘수정·삭제’ 버튼 비활성화

〈등록 7일 이내〉     ⇨ 〈등록 7일 후〉  

• 전자제출 방식(시스템 등록)외의 제출 방식

1) 모사전송(FAX) 방식(아래의 연락처 참고)

- 소재지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모사전송(FAX) 직접 전송

※ 자료 전송 후 반드시 관리 담당자의 수신 여부 확인 필요

2) 우편배송(택배포함) 방식(아래의 연락처 참고)

- 소재지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택배 배송(단 수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함)

3) 전자우편 방식(아래의 연락처 참고)

- 제출 자료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후 반드시 소재지 응급의료지원센터 제출관리 담당자의 수신 확인 필요

4) 방문 제출

- 소재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 ‘전자제출 방식(시스템 등록)’ 이외의 방식으로 제출 시 필수항목 누락 또는 식별이 불가한 처치기록은 반송 조치됨

〈출동 및 처치기록 관련 자주하는 질문〉

I. 출동 및 처치기록 작성에 관한 일반 문의

(Q1) 출동 및 처치기록은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요?

(A1) ‘응급구조사 등’(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작성)이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구조사등이 출동 후 환자의 이송 거부 등으로 이송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동사항, 처치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하며, 이송의 종류는 “미이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2) 의료기관이 아닌 의무실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로 경미한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도 출동 및 처치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A2) 경미한 환자라도 ‘응급구조사등’이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작성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참조)

(Q3) 본 기관에서는 구급차가 출동할 일이 없습니다. 주유나 차량정비 등으로 출동하는 경우에도 출동 및 처치기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A3) 환자 이송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구급차 운행 시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별지 제16호 의2서식)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Q4) 의료기관의 구급차가 아닌 위탁업체 구급차(또는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출동 및 처치기록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4) 위탁업체에서 직접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탑승한 동승자(응급구조사등)가 작성해야 합니다.

(Q5) 의료기관에서 자택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A5) 환자를 자택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기타 이송'에 해당 됩니다.

〈이송의 종류 구분〉

- 현장이송: 출발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도착지가 의료기관인 경우
- 의료기관간 이송: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의료기관인 경우
- 미이송: 환자(또는 보호자)의 이송 거부, 이송중단, 이송 불필요 등으로 미이송한 경우
- 기타이송: 도착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Q6) 의식수준의 A.V.P.U가 무엇인가요?

(A6) 의식상태 분류방법으로, A(Alert) 명료한 상태, V(Verbal response) 목소리에 반응하는 상태, P(Pain response) 통증자극에 반응하는 상태, U(Unresponse)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Q7) 이송 중 이송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7)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의료지도 없이 해당 범위 내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합니다.

(Q8) 환자를 타병원으로 이송한 후 대기하다가 다시 본병원으로 이송(회송)한 경우에는 출동 및 처치기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8) 출동 요청을 받아 출동하여 이송을 개시한 시점부터 도착병원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까지를 하나의 이송 과정으로 봐야 하며, 이송 단위별로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이송 후 다시 A병원으로 돌아왔다면, A병원에서 B병원 이송에 대한 기록과 B병원에서 A병원 이송에 대한 기록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Q9) 출동 및 처치기록은 몇 부 작성해야 하나요?

(A9) 출동 및 처치기록은 총 3부 작성하여 1부(원본)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보관(3년간)하고, 1부는 응급환자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 징수용(이송처치료 영수증과 별개)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출동 및 처치기록은 다음달 10일까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1) 진료의사: 도착기관에서 출동 및 처치기록지 조회 메뉴로 확인 가능
- 2) 환자 또는 보호자: 출동 및 처치기록지 하단에 SMS 전송 버튼 선택 시 SMS로 발송
- 3) 구급차 운용자: 구급차 기록 관리 시스템(AiR)에 제출

(Q10) 닥터헬기로 환자를 이송할 경우 헬기 계류장(인계점)까지 구급차를 이용 하는데 출동 및 처치기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10) 구급차등 이용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을 각각(구급차, 닥터헬기)작성해야 합니다.

(Q11) 운전자의 '번호'란에는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A11) 운전자의 '번호'란에는 운전자의 자격에 따른 번호를 입력합니다. 운전면허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종별을 '그 밖의 자격 면허자(예: 1종 보통)'로 선택한 후 운전면허증 번호를 입력합니다. 운전자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종별로 선택한 후 각각의 자격번호(1급 응급구조사 자격번호 또는 간호사 면허번호)를 입력합니다.

II. 출동 및 처치기록 제출 및 보관에 관한 일반 문의

(Q12)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전자적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요?

(A12)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을 통해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모바일 앱(APP)으로 작성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보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13) 출동 및 처치기록을 환자 보호자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A13)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의해 출동 및 처치기록은 3부 작성하여 응급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서명을 받은 뒤, 그 중 1부는 이송처치료 징수용(이송 처치료 영수증과 별개)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작성·제출하는 경우 문자(SMS)로 환자(보호자)에게 전송 가능합니다.

(Q14) 출동 및 처치기록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시스템에 등록 제출이 가능한가요?

(A14) 법적 제출기한이 지난 출동 및 처치기록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15) 필수항목인 환자 '인수자의 면허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15) '인수자 면허번호, 성명 및 서명'은 환자의 안전한 이송, 연속적인 치료유지 및 사후관리 확인을 위해 필수적 사항으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모든 환자의 경우 취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면허(자격)번호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종별 선택 후 면허번호에 아라비아 숫자 '0000'을 기입

(Q16) 출동 및 처치기록을 반드시 전산(시스템)으로 등록 제출해야 하나요?

(A16) 네 그렇습니다. 출동 및 처치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을 통해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Ⅲ. 출동 및 처치기록지 등록에 관한 일반 문의

(Q17) 출동 및 처치기록을 시스템에 등록·제출 후 오류사항 발견 시 수정할 수 있나요?

(A17) 등록일 기준 7일 이내에만 수정·삭제가 가능하며, 이후 수정·삭제는 불가합니다.

(Q18) 출동 및 처치기록을 시스템에 등록 시 사용자 계정(ID)을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A18)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사용자는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관정보는 통합관리 되므로 사용자별 승인을 받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Q19) 출동 및 처치기록을 시스템에 등록 시 등록(저장)되지 않고 계속 로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나요?

(A19) 입력항목 중 특수문자(“ ’ : ; ? [] { }”)가 사용된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수정·변경해야 합니다.

Ⅳ. 기타(구급차)에 관한 일반 문의

(Q20) 구급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동일해도 되나요?

(A20) 운전자가 응급구조사등의 자격(면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응급구조사등 탑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에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등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을 항상 구급차에 탑승시켜야 합니다.

♣ 출동 및 처치 기록 관련 응급의료지원센터 연락처

지원센터	사무실 전화	팩스번호	우편번호	주소
서울응급의료 지원센터	02-2133-7542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내
	02-2133-7541			
부산응급의료 지원센터	051-254-31114	051-254-3112	473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엠디엠타워 20층
	051-254-3119			
대구응급의료 지원센터	053-427-0530	053-710-7234	41914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 KT대구타워 본관 10층
	053-252-1157			
인천응급의료 지원센터	032-440-3256	032-716-6854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4층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팀
	032-440-3255			
광주응급의료 지원센터	062-233-1339	062-226-1339	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82번길 16,5F
	062-236-1339			

지원센터	사무실 전화	팩스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전응급의료 지원센터	042-223-5101	042-710-7261	35261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6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 2층
	042-223-5100			
울산응급의료 지원센터	052-229-3675	052-700-7131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제1별관 5층 식의약안전과
세종응급의료 지원센터	044-715-5471	044-300-3829	3015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214호
경기응급의료 지원센터	031-8008-5641	031-8008-2429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8층
	031-8008-5639			
강원응급의료 지원센터	033-748-4911	033-823-4806	26426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서미감관 2층
	033-748-4909			
충북응급의료 지원센터	043-266-6124	043-260-8754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동 2층 215호
	043-266-6137			
충남응급의료 지원센터	041-634-9351	0303-948-2626	32256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3, 305B호
	041-634-9352			
전북응급의료 지원센터	063-276-9573	063-276-9574	5490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건지로20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층
	063-276-9572			
전남응급의료 지원센터	061-274-1339	061-272-1330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도민동 5층
	061-273-1337			
경북응급의료 지원센터	054-441-1339	054-715-3583	39287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 17 2층
	054-441-1338			
경남응급의료 지원센터	055-286-9548	0303-0954-9546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경남도청 본관 B112
	055-286-9549			
제주응급의료 지원센터	064-710-2337	064-710-2919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1청사 별관 3층 보건정책과

붙임 5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작성·보존 방법

○ 작성 체계

구급차 운용
(환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구급차 운행 시 작성)



구급차등의 운전자
대장 전자적 작성·보존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 작성 대상

- 응급의료법 제44조(구급차등의 운전자)

○ 작성 기한

- 별도 법적 작성 기한은 없으나, 구급차 운행이 종료된 직후 작성 필요

○ **작성 방법:**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존해야 하므로,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작성·보존

〈전자적 작성(시스템 등록) 방법〉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http://air.nemc.or.kr>)에 로그인 및 OTP 인증 후 접속
운행기록대장 관리 > 운행기록대장 등록관리

〈운행기록대장 등록방법〉

1. 기본정보

출동 및 처치 기록지 관리 운행기록대장 관리 구급차 관리 통합게시판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인증 평가 관리

운행기록대장 관리 **운행기록대장**

운행기록대장 등록 관리

장악시도 후
사용본거지 보관소명

유형구분 --시/도-- --구/군-- 사용본거지 보관소명 검색 차량번호 9999

운행구분 --전체-- 등록구분 --전체-- 운행기간분류 --전체--

운행기간상태 운종 운행일자 2026-07-12 2026-07-12 --전체--

위탁기관명 운용기관명 차량 --전체--

운용자구분 --전체-- 기록코드 등록시스템 --전체--

1

보기	시도	구/군	사용본거지 보관소명	운용자구분	기록코드	운용기관명	차량번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	공립 제3조에 따른 의료기	P0300001	중앙응급의료센터	997999
2				공립 제3조에 따른 의료기			797999
3				공립 제3조에 따른 의료기			786999
4				공립 제3조에 따른 의료기			745999

① 차량검색 및 선택: 구급차 차량번호 검색하여 입력 및 작성하고자 하는 차량번호 선택

② '운행기록 추가' 버튼 클릭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 등록/수정 화면

구급차 등록번호	특수구급차	등록(신규)번호	제적 연월일	2025년
공통	운행기록명	등록번호	제적 최종등록일	2025-07-09
구급차	차대번호	1차 차량 연장 신장일	2차 차량 연장 신장일	
	최초등록연월	3차 차량 연장 신장일	4차 차량 연장 신장일	

보기	운행연번	운행목적	출발 시간	출발지 명칭	도착 시간	도착지 명칭
37	260719		2026-07-19 21:42		2026-07-19 22:19	
38	260719-1	① 응급의료출사차의 운송	2026-07-19 15:58		2026-07-19 16:35	
39	260719-1	① 응급환자의 이송	2026-07-19 15:09		2026-07-19 15:37	
40	260719-1	① 응급의료출사차의 운송	2026-07-19 14:04		2026-07-19 14:37	
41	260719		2026-07-19 10:49		2026-07-19 11:19	
42	260719		2026-07-19 10:49		2026-07-19 16:47	
43	260718		2026-07-18 21:26		2026-07-18 21:36	
44	260718		2026-07-18 14:14		2026-07-20 12:03	
45	260718		2026-07-18 11:59		2026-07-18 14:54	
46	260718		2026-07-18 07:25		2026-07-18 07:40	

84 rows loaded.

1 **운행기록 추가**

소요시간 : 0.888초

II. 구급차 운행기록에 관한 사항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 등록/수정 화면

1. 운행내역

* 운행일: 운행차수가 포함되어 운행연번으로 등록됩니다. 운행차수는 순차로 기입가능합니다.
 * 출발 및 도착기록지 번호는 기록지 선택성능 부여하는 번호로 해당 기록지 부속 공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운행일: 2026-07-24 운행차수:
 운행목적(번호): ==운행목적선택==
 출발시간: 2026-07-24 11시 20분 출발지 명칭:
 도착시간: 2026-07-24 11시 20분 도착지 명칭:
 운행거리(km): 누적주행거리(km):
 출발 및 도착기록지 번호: ☐ 해당없음 비고:

2. 탑승인력

동승자 성명: ☐ 해당없음 운전번호-지역번호: ☐ 해당없음
 운전자 성명: 운전자 사명: 서명:

① 운행내역

- 운행일: 구급차를 운행한 연월일 작성
- 운행차수: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1,2,3,4,... 기입
 - 하나의 이송에 대한 운행기록이 나뉘진 경우에는 동일한 1개 차수로 기입
 (예: 운행일 26년4월21에 이송한 A환자의 운행기록이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진 경우 운행연번 (260421-01)을 동일하게 입력)
 - A→B병원으로 환자를 이송 후, 차고지 복귀하였다가 다시 B→A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운행 목적은 동일하나 별개의 차수를 입력해야 함
 ※ 운행일과 운행차수 입력 완료 시 '운행연번'이 자동으로 표출됨

- 운행목적(번호): 아래 운행 목적 중 택1
- 1. 응급환자의 이송
-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및 장비 등의 운반
- 3.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 4. 현장 및 진료 중 사망자를 의료기관 등에 이송
- 5.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사업 수행 업무
- 6. 거동이 불편한 환자(또는 척추장애 환자)
- 7. 행사 등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 8.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른 구급차 운행정비

(운행목적 작성 시 참고)

법령 문구	시스템상 문구
1. 응급환자의 이송	작동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및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작동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4. 현장 및 진료 중 사망자를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5.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사업 수행 업무
6.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6. 거동이 불편한 환자(또는 척추장애 환자)
7.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7. 행사 등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기타)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라 구급차 운행 정비 (자동차 정기검사, 주유, 산소통 충전 등)하기 위한 불가피한 운행의 경우	8.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른 구급차 운행 정비

- 출발시간: 구급차가 출발지에서 출발한 시간 작성(24시간제로 작성)
- 출발지 명칭: 구급차가 출발한 구체적인 기관명(장소명)을 작성
- 도착시간: 구급차가 도착지에 도착한 시간 작성(24시간제로 작성)
- 도착지 명칭: 구급차가 도착한 구체적인 기관명(장소명)을 작성
ex) 차고지, 의료기관명, 건물명, 도로명 주소 등
- 운행거리(km): 출발지에서 출발하여 도착지 도착 시까지 구급차가 이동한 거리
※ [운행거리] = [도착 후의 누적 주행거리] - [직전 운행기록의 누적 주행 거리]
- 누적주행거리(km): 운행 종료 시점의 구급차 계기판의 총 누적 주행거리를 작성
※ [누적 주행거리] = [직전 운행기록의 누적 주행거리] + [당회 운행거리]
- 출동 및 처치기록지 번호: 출동및처치기록지를 작성하는 경우에 전산으로 자동 생성되는 번호를 기입
- 비고: 운행기록대장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시 기입

■ 기본정보

등록구분	직장제출		
등록기관		이송차량	
등록일시		등록일시	
수령일시		수령일시	

출동 및 처치기록지 번호 : 3795231

※ 출동및처치기록지 작성 시 출동및처치기록지 번호가 생성되어 해당번호로 출동및처치기록지 조회 및 구급차 운행기록대장 연동 작성 가능

② 탑승인력

- 동승자 성명: 동승자(응급의료종사자)의 성명 작성하며, 동승자가 없을 시 미작성
- 면허/자격번호: 동승자(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번호 작성하며, 동승자가 없을 시 미작성
- 운전자 성명: 구급차를 운전한 자의 성명 작성 및 서명

※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양식 전환

- 2026. 7. 13. 기준으로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양식이 개정됨
- “운행일시”를 기준으로 개정 전·후로 양식이 전환됨
- 전환 이후 작성 내용이 초기화되므로 확인 필요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수정·삭제 방법〉

- 운행내역 선택: 등록된 자료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등록관리 메뉴에서 현황 목록을 조회 후 선택
- 정보를 수정한 다음 ‘수정’ 또는 ‘삭제’ 버튼 클릭
 - ※ 운행기록대장은 구급차등의 모든 운행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빈칸이 없이 모두 기입하여야 함
 - ※ 등록일 기준 7일 이내에만 수정·삭제가 가능하며, 이후 수정·삭제는 불가함.

〈실시간 운행기록(GPS) 전송여부 확인방법〉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 등록/수정 화면

구급차 등록 구분	일반 구급차	응급응급의료센터	등록(신규)번호	제작 연월일	2016년
공통	운행기록명	응급응급의료센터	등록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2016-11-30
구급차	차대번호		1차 차량 연장 신장일	2차 차량 연장 신장일	
	최초등록연월		4차 차량 연장 신장일		
	3차 차량 연장 신장일				

번호	운행일	출발지	출발시간	도착지	도착시간	운행거리(km)	누적 운행거리(km)
1	2026-07-12	구대항동	2026-07-12 00:27	구대항동	2026-07-12 00:28	1212	1313
2	2026-07-12	청(청진)	2026-07-12 00:05	자백	2026-07-12 00:06	123	
3	2026-07-10		2026-07-10 21:56		2026-07-10 21:58	1.5	
4	2026-07-10	기원(방방)	2026-07-10 20:38	응급응급의료센터(서울특별시)	2026-07-10 20:39	12345	
5	2026-07-10	별면계상기(별면계상기)	2026-07-10 20:06	유양현	2026-07-10 20:07	1313	
6	2026-07-10		2026-07-10 20:03		2026-07-10 20:04		
7	2026-07-10		2026-07-10 20:01		2026-07-10 20:02		
8	2026-07-10	기원(주소)	2026-07-10 19:53	자백	2026-07-10 19:54	1	
9	2026-07-10	영광(영광시)	2026-07-10 17:53	자백	2026-07-10 17:55	1	
10	2026-07-09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2026-07-09 21:03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2026-07-09 21:04	123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서울특별시)

영광(영광시)간접응급의료센터

○ 운행기록대장 등록/수정 화면에서 확인하는 방법

-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저장방법에 따라 행별 색깔이 구분되어 식별 가능
- 운행연번: 운행일+운행차수가 합산되어 등록됨
- 등록시스템: 운행기록대장이 등록된 경로에 따라서 행 색깔이 구분되어 생성됨.
 - 백색: 실시간 운행기록(미타기), 실시간 운행기록(장치), 모바일 작성, 웹(WEB) 작성 항목
 - 하늘색: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작성한 경우 연계되어 자동생성된 항목

〈구급차 운행기록대장 및 실시간 운행정보 관련 자주하는 질문〉

I. 구급차 운행기록대장 작성에 관한 일반 문의

(Q1)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은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요?

(A1) 환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구급차를 운행하였다면 모든 운행(주유, 정비, 수리 등 포함)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Q2) 응급환자의 이송이 종료된 후 환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고지로 복귀할 때의 운행목적은 무엇인가?

(A2) 차고지 복귀까지를 "1. 응급환자의 이송"으로 판단하고 있어 해당 목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Q3)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된 실시간 운행정보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실시간 운행정보만 전송되면 운행기록대장은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A3) 실시간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이 시동 on-off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을 통해 자동 생성됩니다.

실시간 운행기록에서는 출발·도착 장소와 시간만 연계되며, 그 외의 항목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Q4) 구급차 운행기록대장도 동승자(응급의료종사자)가 작성해야 하나요?

(A4)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은 구급차 운전자(운전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Q5) 신설된 '출동 및 처치기록지 번호' 항목은 무엇이며,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먼저 작성하면 '출동 및 처치기록지 번호'가 기입된 운행기록대장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동 생성된 운행기록대장의 일부 항목을 추가 기입하여 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동 및 처치기록지가 없는 운행의 경우(예: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른 구급차 운행 정비 등)에는 '해당 없음'을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Q6) 개정 양식상 운행연번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에서 운행연번이 보이지 않고 운행차수만 보이는데 입력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6) 운행차수는 일자별로 구급차 운행에 대한 일련번호(1, 2, 3, ...)를 기재합니다. 하나의 구급차 출동 건에 대하여 출발 시부터 복귀 시까지는 동일한 운행차수를 입력하며, 날짜가 바뀌면 다시 1부터 시작합니다. 운행차수 입력란에는 숫자만 입력하며, 입력한 운행차수(예: 1)는 운행일과 자동으로 결합되어 운행연번(예: YYMMDD-1)으로 생성되므로 '-'(하이픈)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성된 운행연번은 구급차 운행기록대장 등록/수정 화면의 '운행연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기존에는 차고지(사무실)에서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환자 이송 이후 차고지로 복귀하는 경우 운행목적을 '기타'로 작성하였는데, '기타'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운행 목적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7) 동일 환자 이송(전원)을 위해 "차고지" → "A병원" → "B병원" → "차고지(복귀)"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 전체를 '① 응급환자의 이송'으로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작성 항목 중 '비고'란이 있으므로 운행기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Q8) 동일 환자를 다수 기관을 경유하여 연속으로 이송하거나, 이송 종료 후 다시 동일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운행차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8) 동일 환자에 대한 하나의 연속된 이송 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부터 환자 이송 및 차고지 복귀까지 동일한 운행차수로 작성합니다. 다만, 이송이 종료된 이후 다른 환자를 이송하거나, 동일 환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이송 요청에 따라 별도의 이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운행 건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운행차수를 부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II. 구급차 운행기록대장 등록에 관한 일반 문의

(Q9)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존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관리하여야 하나요?

(A9)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실시간 제출한 구급차 운행기록(GPS)을 토대로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에 운행기록대장이 자동 생성되고, 해당자료를 기초자료로 구급차 운용자가 내용 검토 및 보완 작성 가능하므로,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Q10)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통해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이 자동 생성되는 경우 출발·도착 장소와 시간이 자동 입력되는데 나머지 항목들도 작성해야 하나요?

(A10)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은 빈칸 없이 모두 입력되어야 하나의 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Ⅲ. 구급차 운행기록대장 보관에 관한 일반 문의

(Q11) 운행기록대장의 전자적 제출 및 관리가 의무화되었는데, 전자 제출 시 별도 보관은 안 해도 되나요?

(A11)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존해야 함에 따라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 모바일 앱(APP) 및 웹(WEB)으로 작성·제출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원본으로 인정 및 보관의 의무가 같습니다.

※ 단,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 상 본인인증 기능이 도입(2027년)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운행기록대장을 제출한 경우 관리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Ⅳ. 실시간 운행정보에 관한 일반 문의

(Q12) 운행기록장치로 운행기록을 실시간 전송해야는데, 응급환자이송업체가 변경되었거나 구급차를 인수한 경우에 운행기록장치에서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12) 응급환자이송업체가 변경되었거나 구급차를 인수한 경우에는 운행기록장치에 등록된 운용 기관 정보 및 차량정보를 현재 운용현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붙임 6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 특수 구급차, [] 일반 구급차, [] 선박, [] 항공기			
	공통	등록번호		
		제작연도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의료장비 등 보유현황

연번	명칭	규격	수량	연번	명칭	규격	수량
1				6			
2				7			
3				8			
4				9			
5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 국적증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7 응급환자이송업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2쪽 중 1쪽)

응급환자이송업 사업계획서

I. 일반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사무소 및 분사무소 (사업장) 현황 ¹⁾	주사무소		(명칭)						
			(주소)						
			(연락처)						
	분사무소(사업장)		(명칭)						
			(주소)						
			(연락처)						
영업지역 ²⁾	(예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일원								
구급차 현황 ³⁾	차량번호	구급차 구분 ³⁾	종별	형식	연식	상용/예비 구분	비고		
	계	00대(특수 00대, 일반 00대)							
	00다0000					상용			
	00며0000					예비			
지도의사 선임 현황 ⁴⁾	성명					주민번호			
	의사면허번호					전화번호			
	소속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과목			
인력 현황	응급의료 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면허) 종별 구분 ⁵⁾	자격(면허) 번호	고용구분 ⁶⁾		
	운전자	성명	생년 월일	운전면허 종별 구분 ⁷⁾	면허 번호	교육 이수 여부 응급차지 교육 ⁸⁾		간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⁹⁾	고용 구분 ⁶⁾
	기타	성명		생년월일		직무		비고	

* 표시는 법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

1) 기본사무소 및 분사무소는 모두 동일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함.

2) 시·군·구 단위

3) 특수/일반 구급차

4) 지도의사는 관할 시·도 소재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여야 하며, 직접 고용 시 고용관계 서류 첨부 제출 (지도의사 위촉 시 자격증 사본 제출)

5) 의료인일 경우 면허명(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일 경우 급수까지 표기(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6) 전일제, 시간제 등

7)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등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9)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

II. 사업 계획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가. 사업 목적

- ☐
- ☐

나. 추진 방향

- ☐
- ☐

2. 세부 추진 계획

- ①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운영 체계 등
- ② 종업원 교육훈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이송서비스 질 향상 계획 등 포함

가.

- ☐
- ☐

나.

- ☐
- ☐

다.

- ☐
- ☐

3. 기대효과

가.

- ☐
- ☐

나.

- ☐
- ☐

붙임 8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구급차 운용현황 점검표 (표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운용상황 및 실태 점검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운용기관명 (대표 : 대표자성명))의 자체 점검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이 따름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8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년 월 일

운용기관명 : _____
대표자 : _____ (인 또는 서명)

※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등 양식을 통일하게 활용하되,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 표지 생략 가능.

1 운용기관 개요

1. 기본사항					
①운용기관명 (개인일 경우 이름)	③사업자 등록번호 (개인일 경우 생년월일)				
②대표자명	④대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⑤대표자 성별 ☐ 남 ☐ 여		
⑥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⑦소재지 우편번호				
⑧운용기관 전화번호	() - ()	⑨운용기관 개설(설립)일	년 월 일		
⑩운용자 구분 (책임자에 체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치료기관 개설신고(허가)번호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미사회 관리부서: 책임자: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 소키장업자 관리부서: 책임자:			
		☐ 4륜자동차경주업자 관리부서: 책임자:			
⑪구급차운용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명: 면허: 의사 / 간호사 () 연번호 호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허가번호: 허가일:				
	☐ 응급환자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비의료법인 법인명: 지역 및 지부:				
	구급차 구급차주 총 대 특수구급차 대 일반구급차 대				
⑫응급환자이송 및 비영리 법인 추가 기재	합승가능 인력	응급의료종사자 총 명	응급구조사1급: 명 응급구조사2급: 명		
	운전사 총 명	외사: 명	간호사: 명		
	법 제50조에 따른 지도의사 (의료기관은 미해당) 이름: 의사면허번호: 호 전문의과목:				
	소속의료기관: 연락처: () -				
⑬응급환자이송 및 비영리 법인 추가 기재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보유 / 미보유			
	휴게실 및 대기실	보유 / 미보유			
	교육훈련시설	보유 / 미보유			

2. 구급차 현황 (서부시장은 ③의 서식을 이용, 차량별로 작성하여 첨부)															
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증상 차명	구급차 구분	제작 년월일	자동차 등록일	주행 거리** (감시일)	위탁운용여부 (의료기관명)	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증상 차명	구급차 구분	제작 년월일	자동차 등록일	주행 거리** (감시일)	위탁운용여부 (의료기관명)
1	007-0000	그랜드스타 렉스 특수구급차	특수	2019 08.06	2020 01.01	54000 (15,539)	서울39병원 위탁	8	007-0000	그랜드스타 렉스 특수구급차	특수	2019 08.06	2020 01.01	54000 (15,539)	서울39병원 위탁
2	009-0000	그랜드 스타렉스	일반	2017 08.06	2018 01.01	85400 (15,228)	자체운용	9	009-0000	그랜드 스타렉스	일반	2017 08.06	2018 01.01	85400 (15,228)	자체운용
3								10							
4								11							
5								12							
6								13							
7								14							

- *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른 제작년월일 및 자동차등록일을 기재.
- ** 자동차등록증상 가장 최근의 자동차 검사시에 확인된 주행거리(km)와 검사날짜를 기재

② 구급차 탑승인력 현황 (단, 병원등 이상 의료기관은 ①나~①에 모든 해당 인력 수를 숫자로 표기하고, 이밖에 소속 응급구조사 운전사만 기재)

1. 응급의료증사자 (응급구조사 등)								
번호	이름 (가나다순)	생년월일	자격(변허) 종별구분	자격(변허) 취득일	'00년 보수교육일	임시일	'00년 00~00월 구급차 탑승건수	4대보험 가입여부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 * 의료인일 경우 변허명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일 경우 급수까지 표기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2. 운전사								
번호	이름 (가나다순)	생년월일	운전면허 종별 구분*	운전면허 취득일	응급처치교육일** (가장 최근 1회)	입사일	'00년 00~00월 구급차 탑승건수	4대보험 가입여부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13		- . -		- . -	- . -	- . -		
14		- . -		- . -	- . -	- . -		
15		- . -		- . -	- . -	- . -		

* 1종 대형, 1종 보통 등, 2종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증서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3. 운용기관 구급차 현황 (구급차 1대당 1부씩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

1. 기본사항									
▶ 자동차등록증 기재 사항									
자동차 등록증번호 : 제 -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자동차 등록번호				②차 종			③용 도		
④차 명				⑤형식 및 모델연도					
⑥차대번호				⑦원동기형식					
⑧사용본거지				⑨소유자 성명 (명칭)					
⑩검사유효기간 및 주행거리				(가장 최근 받은 검사 기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행거리 : km)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사항									
⑪제적년월일		년 월 일							
▶ 자동차 보험 및 운행기록 관련 사항									
		가입보험사		보험가입지명		보험증권번호		만기일	
⑫책임보험								년 월 일	
⑬종합보험 (책임보험 포함 ☐)								년 월 일	

▶ 신고통보·허가 필증 부착 증빙 사진	
※ 제출 기준 : 긴 변이 가로가 되도록 촬영,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사진 파일 첨부, 필름 카메라 또는 인화한 경우 3·5 사이즈 사진을 원칙으로 함	
⑭ 필증 부착 사진(1)	⑮ 필증 부착 사진(2)
- 차량 앞면에 부착된 신고필증을 근접 촬영 - 촬영한 필증이 사진의 위아래 높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크게 촬영	- 구급차 정면을 사진에 가득 차도록 촬영 - 단, 필증 부착 위치가 사진 상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이 사진에 같이 나오도록 촬영

2.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 기준					
(※ 「구급차의 기준 및 등급환자사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을 참고하여 해당사항 체크표시 또는 내용기재)					
① 구급차의 종류		☐ 일반구급차 ☐ 특수구급차			
② 구급차의 표시·	바탕색 (원색)	녹색지 표시 (현후좌우 중 2면 이상)	가로로 띠 표시 (일반구급차: 적색 / 특수구급차: 적색)	글씨 표기 (일반구급차: 환자이송 / 특수구급차: 응급출동)	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
	☐ 흰색 ☐ 흰색이남	☐ 예 ☐ 아니오	☐ 녹색 ☐ 적색	☐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 ☐ 응급출동	☐ 표시 ☐ 미표시
③ 환자실	길이		너비		높이
	운전석과의 구획칸락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cm 이상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 때 적어도 한쪽 면과의 총로가 25cm 이상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 일반구급차: 120cm 이상 특수구급차: 150cm 이상
	cm		cm		cm
④ 내부장치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간이침대	☐ 있음 ☐ 없음(특수구급차는 표기하지 않 것)	간이침대 (접이식, 네바퀴)	☐ 있음 ☐ 없음	
	보조틀것	☐ 있음 ☐ 없음			
	갈고리	☐ 있음 ☐ 없음	간 의자	☐ 있음 ☐ 없음	
	의료장비함	☐ 있음 ☐ 없음	물탱크와 연결된 상크대	☐ 있음 ☐ 없음	
	응급의료인명식	☐ 있음 ☐ 없음	교류발생장치	☐ 있음 ☐ 없음	
	조명장치	☐ 있음 ☐ 없음	※ 특수구급차는 좌측의 일반구급차란(간이침대는 제외)을 모두 기재한 뒤 추가로 위 사항을 기재		
	이동용 조명장치	☐ 있음 ☐ 없음			
	환풍기	☐ 있음 ☐ 없음			
	전기공급장치	☐ 있음 ☐ 없음			

•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 소방구급차는 별도 기준에 따름

3.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분	제 품 명		의료기기 허가(신고) 번호	제 조 업 자 (또는 수입 업자) 상호	사 용 (유효) 기간	저장방법 및 확인			작동여부 (개수)
	품 목 명	형 명 (形名)				온도	습도	준수 여부	
일반·특수공통	신체검진	체온계							작동/고장
		청진기							개
		휴대용혈압계							작동/고장
		휴대용 산소포화 농도 측정기							작동/고장
	기도확보 유지	구인도기도기							개
		비인도기도기							개
	호흡유지	성인용 마스크	안면마스크						개
			비재호흡마스크						개
			백열 브마스크						개
		소아용 마스크	안면마스크						개
			비재호흡마스크						개
			백열 브마스크						개
		의료용 산소발생기							작동/고장
		산소공급장치							작동/고장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Suction)							작동/고장

3. 구급차의 의료장비									
순환유지	정맥주사세트	☐ 있음 ☐ 없음							
외상처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 압박붕대 ☐ 일 반 거즈 ☐ 반창고 ☐ 지혈대 ☐ 라텍스장갑 ☐ 비닐장갑 ☐ 가위 ☐ 약품상자 ☐ 폐기물보관통 ☐ 기타()							
구분	제 품 명		의료기기 허가(신고) 번호	제 조 업 자 (또는 수입 업자) 상호	사 용 (유효) 기간	저장방법 및 확인			작동여부 (개수)
	품 목 명	형 명 (形名)				온도	습도	준수 여부	
일반·특수공통	신체검진	환자감시장치							작동/고장
		혈당측정기							작동/고장
	기도확보 유지	후두경							작동/고장
		기도삽관튜브							개
	호흡유지	의료용 분무기							작동/고장
		휴대용 간이인공호흡 기(자동식)							작동/고장
		심장박동 회복							작동/고장
	외상처치	철부목							개
		공기 또는 진공부목							개
		경추보호대							개
		척추보호대							개

* 수량은 유효기간별 기재 / *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에 의거, 응급장비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4. 구급차의 구급의약품									
법정분류	명칭(상품명)	제조사	용량 (ml or cc)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저장방법 및 확인			수량	비고
					온도	용기	준수 여부		
일반 · 특수 공통	수액제제 (생리식염수 등)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								
	생리식염수 (상치세척용)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								
	포비돈액								
특수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병 (아나필렉시스 쇼크시)								
	주사용 비마약성 진통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니트로글리세린 (심하용)								
	흡입용 기관확장제								

* 수량은 유효기간별 기재

5. 기타장비 등						
(※ ③④⑤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운전자에 한해 필수 기재, ①②⑥은 장착한 운전자만 선택적으로 기재)						
법정구분	제 품 명	제 조 업 체	제 품 번 호	정보관리책임자	정보백업주기	장비검정일시 (가장 최근)
①운행기록장치						
②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등)						
③요금미터장치						
④신용카드 결제기						
⑤이송처치로 안내문	차량내에 이용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 부착 ☐ 미부착					
⑥영상정보처리기기						

▶ 요금 미터기 · 신용카드결제기 부착 증빙 사진 - 법 제44조 제2호의료기관, 제4호(응급환자승임), 제5호(대안구조봉사자) 필수 제출 (※ 제출 기준 : 긴 변이 가로가 되도록 촬영,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사진 파일 첨부, 필름 카메라 또는 인화한 경우 3:5 사이즈 사진을 원칙으로 함)	
㉠미터기 등 부착 증빙 사진(1)	㉡미터기 등 부착 증빙 사진(2)
• 전원을 켜고 미터기에 기본요금이나 표시된 상태에서,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근접 촬영 • 미터기 또는 카드결제기 중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사진 세로 높이의 2/3 이상을 차지하도록 촬영 ※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한 화면에 동시에 담아 촬영하기 어려울 경우 각각 촬영하여 2장으로 제출 가능	•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가 장착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석측 또는 보조석측 문을 열고 차량 밖에서 안쪽으로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촬영 • 너무 겹쳐 나와 식별 불가능한 사진은 인정치 않음 ※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한 화면에 촬영하기 어려울 경우 각각 촬영하여 2장으로 제출 가능

붙임 9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 특수 구급차, [] 일반 구급차, [] 선박, [] 항공기		
	공통	등록번호	
		제작연도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2.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0 재발급 신청서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운용 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특수 구급차(), 일반 구급차(), 선박(), 항공기()		
	등록번호		
	제작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1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개요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Ambulance information & Records)

- 구급차의 운용기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전용 ①어플리케이션(APP) 및 ②웹페이지(WEB)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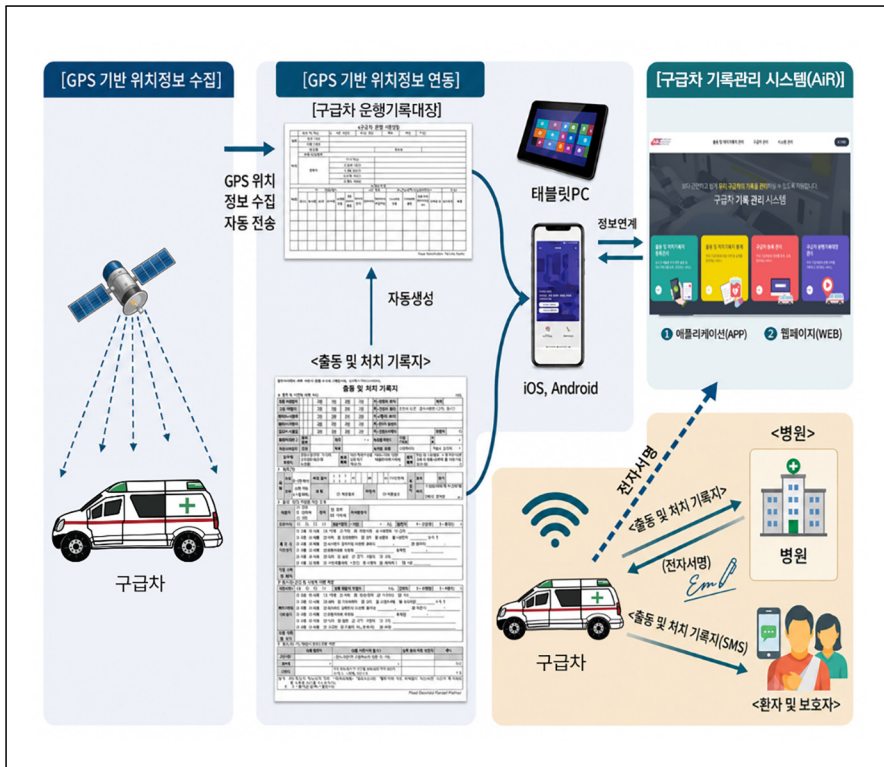
* '구급차 운용기록'은 응급의료법에 근거하여 구급차 운행 시 작성하는 기록으로 '출동 및 처치기록지'(별지 제16호서식)와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말함

※ 어플리케이션(APP) 다운 방법: 앱스토어에서 "구급차 기록 or AiR" 검색 후 설치

※ 웹페이지(WEB) 주소: <https://air.nem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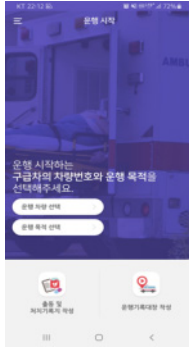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아이디, 비밀번호로 사용 가능

1. 시스템 흐름도



2. 시스템 주요 기능

① 어플리케이션(A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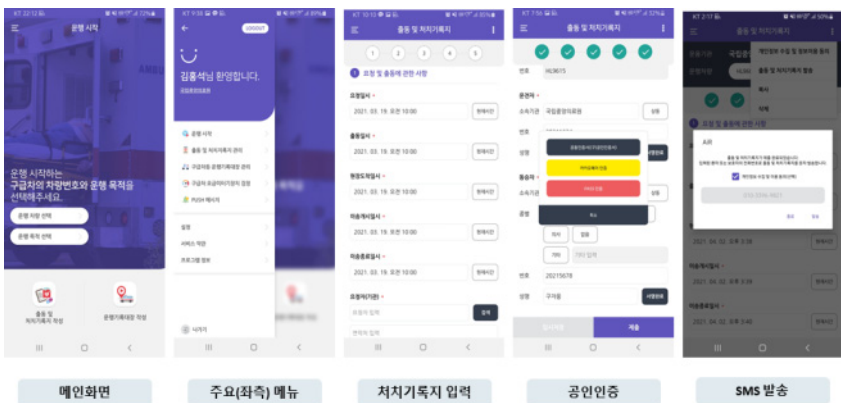


-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운용기록 '작성·등록·조회·삭제' 가능
- 모든 운용기록에 대해 시스템 자동 연계 가능
-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공공인증서, 카카오페이 및 PASS 인증) 가능
- SMS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등록 가능
- PUSH 메시지 전송 기능 (임시 저장 기록지 및 구급차 운행 연한 도래 알림 등)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 결과 조회 가능

② 웹페이지(W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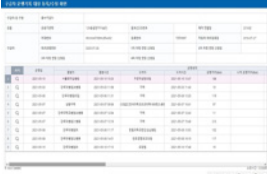
- 구급차 운용기록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및 로그인 계정 연동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계정과 동일 ID/PW 사용)
- 구급차 운용기록 입력·조회·출력 등 정보관리 가능
- 의료기관에서 이송 환자에 대한 정보 조회 및 확인 가능
- 구급차 운용기록에 대한 이송이력 및 실적관리(통계) 가능



어플리케이션(APP)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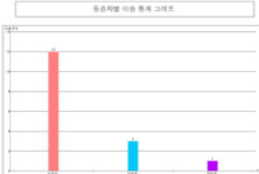
- 출동 및 처치기록지 등록관리
- 출동 및 처치기록지 통계
- 구급차 등록관리
- 구급차 운행기록대장 관리



정보 입력 및 수정-삭제



정보 조회 및 인쇄



통계 및 그래프

웹페이지(WEB) 소개

3. 시스템 사용 시 효과(출동 및 처치기록지·운행기록대장)

[모바일 앱(APP)] 현장에서 실시간 운용기록 관리

① 출동 및 처치기록지

- 2026. 7. 13.부터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의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모바일 앱(APP)을 통해 작성 시 현장에서 즉시 출동 사항, 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 작성 가능
-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모바일 앱(APP) 사용을 권장
- 시스템으로 공인인증을 통해 제출됨에 따라 구급차 운용기록 '작성, 보관, 제출'에 대한 법적 의무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같음(종이 서식 작성 및 보관 불필요)

② 구급차 운행기록대장

- GPS기록과 연동한 전자적 시스템 관리 방식으로 기록관리 간소화 및 정보의 정확성 향상
-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의 전자적 관리를 통해 구급차 운행기록의 작성·관리가 용이하며, 전자 서명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법적의무 모두 이행한 것으로 인정(종이서식 작성 및 보관 불필요)



붙임 12 시·도별 구급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시도	담당과	담당팀	행정번호
서울	보건의료정책과	재난의료대응팀	02-2133-7538
부산	보건위생과	응급의료팀	051-888-3641
대구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팀	053-803-6292
인천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팀	032-440-3253
광주	공공보건의료과	공공의료팀	062-613-3353
대전	의료정책과	의료지원팀	042-270-4034
울산	식약안전과	의약품관리담당	052-229-3673
세종	보건정책과	응급재난의료팀	044-300-5723
경기	응급의료과	응급의료지원팀	031-8008-4353
			031-3008-4775
강원	공공의료과	응급의료팀	033-249-2987
충북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	043-220-3123
충남	보건정책과	응급의약팀	041-635-2644
전북	보건의료과	응급의료팀	063-280-2454
전남	식품의약과	의료관리팀	061-286-5781
경북	공공의료과	응급의료대응팀	054-880-3875
경남	의료정책과	응급의료담당	055-211-5074
제주	보건정책과	응급의료팀	064-710-2923

붙임 13 시·도별 구급차 신고 현황

(2026.05.기준)

시도	구분	합계	국가 및 지자체					의료 기관	산업체 등	환자 이송업	비영리 법인
			소계	지자체	소방청	법무부	경찰청				
합계	계	5,857	2,431	434	1,966	1	30	2,019	168	1,158	81
	일반	2,352	260	226	3	1	30	1,778	96	173	45
	특수	3,505	2,171	208	1,963	-	-	241	72	985	36
서울	소계	767	242	51	190	-	1	180	6	258	81
	일반	290	15	13	1	-	1	151	2	77	45
	특수	477	227	38	189	-	-	29	4	181	36
부산	소계	354	113	25	87	-	1	172	10	59	-
	일반	201	13	12	-	-	1	170	2	16	-
	특수	153	100	13	87	-	-	2	8	43	-
대구	소계	271	101	17	-	-	1	122	-	48	-
	일반	126	5	4	83	-	1	117	-	4	-
	특수	145	96	13	-	-	-	5	-	44	-
인천	소계	269	110	19	91	-	-	116	10	33	-
	일반	121	11	11	-	-	-	104	6	-	-
	특수	148	99	8	91	-	-	12	4	33	-
광주	소계	194	51	8	42	-	1	107	6	30	-
	일반	97	6	5	-	-	1	87	4	-	-
	특수	97	45	3	42	-	-	20	2	30	-
대전	소계	174	47	8	38	-	1	110	-	17	-
	일반	103	4	3	-	-	1	99	-	-	-
	특수	71	43	5	38	-	-	11	-	17	-
울산	소계	121	48	8	40	-	-	20	16	37	-
	일반	40	5	5	-	-	-	14	13	8	-
	특수	81	43	3	40	-	-	6	3	29	-
세종	소계	32	18	2	16	-	-	6	1	7	-
	일반	9	1	1	-	-	-	6	-	2	-
	특수	23	17	1	16	-	-	-	1	5	-

시도	구분	합계	국가 및 지자체					의료 기관	산업체 등	환자 이송업	비영리 법인
			소계	지자체	소방청	법무부	경찰청				
경기	계	1,033	417	63	347	1	6	356	24	236	-
	일반	409	59	52	-	1	6	315	11	24	-
	특수	624	358	11	347	-	-	41	13	212	-
강원	소계	313	174	34	137	-	3	67	14	58	-
	일반	98	20	17	-	-	3	55	11	12	-
	특수	215	154	17	137	-	-	12	3	46	-
충북	소계	248	115	21	93	-	1	70	4	59	-
	일반	78	9	8	-	-	1	58	2	9	-
	특수	170	106	13	93	-	-	12	2	50	-
충남	소계	357	171	26	142	-	3	101	22	63	-
	일반	139	22	19	-	-	3	98	12	7	-
	특수	218	149	7	142	-	-	3	10	56	-
전북	소계	314	151	26	125	-	-	122	2	39	-
	일반	129	12	12	-	-	-	113	2	2	-
	특수	185	139	14	125	-	-	9	-	37	-
전남	소계	375	201	36	160	-	5	101	20	53	-
	일반	113	29	23	1	-	5	70	13	1	-
	특수	262	172	13	159	-	-	31	7	52	-
경북	소계	422	216	46	164	-	6	120	9	77	-
	일반	135	26	20	-	-	6	100	-	9	-
	특수	287	190	26	164	-	-	20	9	68	-
경남	소계	525	206	33	172	-	1	227	19	73	-
	일반	241	19	18	-	-	1	207	14	1	-
	특수	284	187	15	172	-	-	20	5	72	-
제주	소계	88	50	11	39	-	-	22	5	11	-
	일반	23	4	3	1	-	-	14	4	1	-
	특수	65	46	8	38	-	-	8	1	10	-

붙임 14 시·도별 응급환자이송업 현황

(2026.05.기준)

연번	이송업체명	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계		155개소		1,161	987	174
서울특별시		28개소		258	181	77
1	(주)129응급구조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98 201호, 202호	02-456-1339	9	5	4
2	(주)9119구급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6길 75 (창동)	02-926-9119	9	7	2
3	(주)EMS명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364 2층 (묵동)	02-6368-2119	13	9	4
4	(주)대한구조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54 (신대방동)	1588-0129	6	5	1
5	(주)명성구급센터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14길 66 206호 (냉천동)	02-1544-7844	7	5	2
6	(주)서울129구급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발로 66 2층 (공릉동)	02-971-0129	16	5	11
7	(주)서울911이송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82 2층	1588-4129	10	7	3
8	(주)성심환자이송단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14 (신월동)	02-2691-1339	10	5	5
9	(주)세이프인메디컬	서울특별시 중랑구 검재로 161-1 5층 (면목동)	1833-9129	6	5	1
10	(주)에스오에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57길 20 3층	1566-0129	6	5	1
11	(주)이엠에스응급환자 이송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1길 36 2층 이엠에스응급환자이송센터 (망원동)	02-313-1339	9	6	3
12	(주)전국응급환자 이송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73 2층 201호 (시흥동)	02-809-0129	12	10	2
13	(주)코리아환자이송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41 (거여동, 현대3차아파트)	02-402-8129	10	8	2
14	(주)클로버이엠에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12 2층 (신길동)	02-6405-0129	6	5	1
15	(주)한성응급환자이송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19 (암사동)	02-442-0129	11	7	4
16	129이엠에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87 (신월동)	1522-8482	5	5	-
17	이엠에스솔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32 (마곡동, 한림리철편)	02-2663-8119	9	9	-
18	(주)24시응급환자이송단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20길 31 1층 (북가좌동)	02-304-0129	11	7	4
19	(주)선응급환자이송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28 (독산동)	02-853-4455	11	6	5
20	주식회사대한911 구조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48길 18 (대림동)	02-832-0911	7	5	2
21	주식회사더한빛메디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5길 26-6 (장안동)	1811-0129	5	5	-

연번	이송업체명	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22	주식회사전국메디컬 이송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3길 15 (천호동)	1800-1292	6	6	-
23	(주)엠티케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3	02-595-1339	11	8	3
24	(주)엠에스코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90 2층 201호 (연희동)	02-420-2114	8	5	3
25	(주)제일응급환자이송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62길 9	02-426-1339	17	12	5
26	(주)중앙응급환자이송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0 LG전자대리점	02-413-5129	10	8	2
27	(주)한국응급구조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57길 60 비-2호 (목동,기림빌딩) (목동)	02-948-9494	9	6	3
28	쿠팡119응급환자이송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121-5, 2층 (답십리동)	02-481-0119	9	5	4
부산광역시		5개소		258	181	77
29	(주)부산응급환자 이송단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13번길 25 부산응급환자이송단	051-636-1199	8	7	1
30	(주)부산코스비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106번길 14 201호 (보수동3가)	051-553-6119	21	11	10
31	(주)비원이엠에스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69번가길 8	051-636-1339	6	6	-
32	(주)사마리안129구급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9번길 23	051-804-0129	16	11	5
33	(주)중앙구일일	부산광역시 서구 흑교로109번길 6 (부용동1가)	051-246-0911	8	8	-
대구광역시		7개소		48	44	4
34	(주)가톨릭응급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00-24 (대봉동)	053-423-9111	5	5	-
35	(주)골든타임응급환자이송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61-1 3층 (대명동)	053-426-1190	13	9	4
36	(주)대구브이아이피응급환자이송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계명대학교 전문관 101호 (대명동)	053-621-0119	8	8	-
37	(주)대구응급환자 이송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14길 28 (지산동)	053-624-0129	5	5	-
38	(주)메디칼응급환자 이송단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12길 67 3층 (동문동)	053-423-0119	7	7	-
39	(주)코드블루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26 2층 (만촌동, 만촌우방하이츠)	053-651-5000	5	5	-
40	(주)플러스응급이송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16길 37 3층 (본리동)	053-219-9111	5	5	-
인천광역시		5개소		33	33	0
41	(주)129응급환자이송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3번길 10-21 3층 301호 (구월동)	032-464-9111	9	9	-
42	(주)911응급환자이송단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30번길 16 (가좌동)	032-584-7500	7	7	-

연번	이송업체명	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43	(주)경인응급구조단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235번길 18 2층 (심곡동)	032-563-8912	5	5	-
44	(주)우리119이엠에스	인천광역시 서구 면개포로 34 3층 (석남동)	032-522-1190	6	6	-
45	(주)인천1339에이엠에스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72 (가정동)	032-567-1339	6	6	-
광주광역시		6개소		30	30	0
46	(유)프로응급환자 이송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1길 78-14 (덕흥동)	062-681-1190	5	5	-
47	(유)한국에스오에스 구급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101동213호	062-367-7777	5	5	-
48	(주)달구	광주 동구 남문로 600 (소태동)	062-236-1191	5	5	-
49	광주응급환자이송단	광주 북구 태봉로 37 태봉로37 상가동 103호 (임동, 2차국제미소래아파트)	062-223-5129	5	5	-
50	메디칼이송단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351번길 4	062-234-9575	5	5	-
51	팀코리아이엠에스(주)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43번길 33 (학동)	062-223-9110	5	5	-
대전광역시		3개소		17	17	0
52	(주)129환자이송단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921번길 40 (대사동)	042-221-0129	7	7	-
53	(주)대전골든타임 응급환자이송센터	대전 서구 복수동로52번길 5 301호 (복수동)	042-583-1190	5	5	-
54	(주)한발129응급 이송센터	대전 서구 도안남로 124 (관저동)	1600-1297	5	5	-
울산광역시		4개소		37	29	8
55	(주)우리응급환자이송단	울산 울주군 삼남읍 중평로 23 2층	052-244-2444	8	6	2
56	(주)울산에스오에스 이송센터	울산 중구 구교로 216 (남외동)	052-223-6666	9	6	3
57	(주)중앙응급환자 이송단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435 1층 (삼산동)	052-293-1339	11	10	1
58	(주)현대응급이송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139번길 38-1 단층 (신정동)	052-261-4911	9	7	2
세종특별자치시		1개소		7	5	2
59	(유)충남129환자 이송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조뱅이길 33	044-866-0129	7	5	2
경기도		36개소		236	212	24
60	(주)129구급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370번길 11-17 (유방동)	031-531-0129	14	7	7
61	(주)129메디컬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405번길 38 2층 (심곡동)	032-655-1339	5	5	-

연번	이송업체명	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62	(주)129이엠에스	경기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247호 (하안동)	1855-1290	5	5	-
63	(주)129한국이엠에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석성로 867 1층	031-338-1339	5	5	-
64	(주)AMS코리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287번길 17-30 공구유통단지 5동 104호	1644-3912	5	5	-
65	(주)경기129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심곡동)	032-345-0129	7	7	-
66	(주)경기이엠에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20 (지동)	031-244-1339	9	9	-
67	(주)누리이엠에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07 (송죽동)	1533-0129	5	5	-
68	(주)돌핀응급환자 이송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59 (보정동)	1566-3605	5	5	-
69	(주)라이프응급환자 이송센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136 지층	1660-1290	10	7	3
70	(주)바른이엠에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460 (단대동)	031-733-1129	6	6	-
71	(주)비사벌메디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양진로470번길 2-39 2층	031-523-8080	6	6	-
72	(주)사랑메디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일로 38 2층 (풍동)	031-812-9878	5	5	-
73	(주)사마리안	경기도 의정부시 중금로 1 (금오동)	031-635-0119	8	8	-
74	(주)사설 129응급환자이송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3 2층 (금오동)	031-848-0129	7	5	2
75	(주)삼911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매송로360번길 3 301호	031-671-0911	7	6	1
76	(주)선한이엠에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31 204호 (이동)	031-414-1129	5	5	-
77	(주)센트럴메디컬	경기 오산시 동부대로436번길 31 2층 (원동)	1899-5943	6	6	-
78	(주)이엠에스천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803번길 42 1층 (대화동)	1644-0129	7	7	-
79	(주)이엠에스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천문로 11 201호 (사동)	031-438-0119	6	5	1
80	(주)정성구급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430번길 74-2 1층 (백석동)	031-904-0911	5	5	-
81	(주)중앙12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2길 80	1522-1129	8	7	1
82	(주)중앙이엠에스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13번길 223 1층 (이충동)	1522-0129	5	5	-
83	(주)케이비이구급센터	경기도 여주시 마장로 48 (능서면) (2층2호)	031-886-1339	5	5	-
84	(주)코리아모빌케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78 3층 (궁내동)	1644-7253	7	6	1

연번	이송업체명	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85	(주)토브메디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79 2층 (본오동)	1833-8085	9	5	4
86	경기구급센터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73, 5층(심곡동, 유진빌딩)	032-664-5129	4	4	-
87	골든아워EPTC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로36번길 81 2층 201호	1855-1399	5	5	-
88	네오에스앤씨(주)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87-1 301호 (월곶동)	031-431-9999	6	5	1
89	(주)구일일인명구급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반길 22	031-682-1339	12	11	1
90	주식회사 이엠에스프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25-4, 1층 (도촌동)	031-757-1475	5	5	-
91	주식회사365구급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17 3층 301호 (신갈동)	031-286-0365	5	5	-
92	(주)하나이엠에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37번길 28 1층 (원천동)	031-267-1339	7	7	-
93	케이큐이엠에스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로36번길 63 1층 (식사동)	031-994-3129	9	8	1
94	프로응급환자 이송센터(주)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12-85 B01, B02호 (클래스트)	031-559-0129	6	5	1
95	협동조합오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65 (야탑동)	031-382-2121	5	5	-
강원도		6개소		61	48	13
96	(주)129구급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370번길 11-17 (유방동)	031-531-0129	14	7	7
97	(주)강원129구급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석로 32 204호 (석사동)	033-252-5129	5	5	-
98	(주)강원129이송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편들길 41 (문곡동)	033-553-9129	15	11	4
99	(주)바른인명구조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주로 160 (후평동)	033-253-0129	15	14	1
100	(주)한국133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631 1층 (명륜동)	033-735-5119	7	6	1
101	강원구일일(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금강로 591	033-461-0911	5	5	-
충청북도		8개소		59	50	9
102	(주)국제응급환자 이송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12 가동 C-102호 (봉명동)	043-272-0129	10	8	2
103	(주)대한구급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78번길 21 302호 (산남동)	043-291-9111	6	5	1
104	(주)충부응급이송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23 (문화동)	043-853-1129	9	8	1

연번	이송업체명	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105	(주)지웅응급환자 이송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14 1층 106호 (사천동)	043-218-0129	10	7	3
106	(주)충북응급환자 이송단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9 D동 충북응급환자이송단 (미평동)	043-222-1129	5	5	-
107	내토응급환자이송단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16-2	043-652-2119	5	5	-
108	중앙응급환자이송단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대로 840 (금릉동)	043-857-1129	7	7	-
109	충청구급이송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577번길 3 2층 204 (봉명동)	043-264-0129	7	5	2
충청남도		10개소		63	56	7
110	(주)911구급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155	041-588-0911	5	5	-
111	(주)충남129환자 이송센터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석길 161 우성상가 201호	041-338-0129	10	7	3
112	(주)충남구급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로 208 (초사동)	041-533-9129	5	5	-
113	(주)충남구급이송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청소큰길 154	041-931-0129	5	5	-
114	(주)충청응급환자 이송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171 (안서동)	041-568-0129	9	8	1
115	(주)하나구급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7길 20 (쌍용동)	041-622-2119	6	5	1
116	(주)홍성내포구급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37 (주)홍성내포구급차	041-977-6129	5	5	-
117	129응급환자이송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48-2 2층	041-552-1129	6	5	1
118	129이엠에스응급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39 2층 201-3,4	041-633-9110	5	5	-
119	충남응급환자이송단	충청남도 당진시 상목길 6 B동 (시곡동)	041-356-0129	7	6	1
전라북도		6개소		39	37	2
120	(유)베스트응급환자 이송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330	063-534-0129	6	5	1
121	(유)전북구급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57, 103호 (조촌동)	063-452-2911	6	5	1
122	(유)전북응급이송 이엠에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76길 33-3 (신용동)	063-851-1339	8	8	-
123	(주)국민이엠에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08 3층 (진북동)	063-272-3230	7	7	-
124	서해응급이송SOS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작8길 76-17 (신풍동)	063-545-1339	6	6	-

연번	이송업체명	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125	하나구급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77 (금암동)	063-275-1339	6	6	-
전라남도		8개소		53	52	1
126	(유)129이송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장자보3길 30-1 2층 129이송센터 (연향동)	061-741-0129	6	6	-
127	(유)남도응급환자 이송단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안길 18-1 남성리 28-21	061-434-0129	5	5	-
128	(주)다온구일일구급 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남산로 162 2층 다온구일일 (풍덕동)	061-721-1339	8	8	-
129	대한구조단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55-1	1899-7129	6	6	-
130	전남EMS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140 2층 전남EMS	061-862-0129	12	11	1
131	제일이송단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25 2층 201호	061-374-9575	5	5	-
132	중앙911	전남 여수시 시전3길 28 2층 (신기동)	1544-9585	5	5	-
133	한국911구급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153-2 3층 (용당동)	1644-9139	6	6	-
경상북도		10개소		77	68	9
134	(주)가디언911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로 64-1 (모전동)	054-554-0911	8	5	3
135	(주)경북911이엠에스 응급환자이송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1로4길 17-5 205호	054-715-3119	5	5	-
136	(주)경북골든타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대잠동)	054-282-1190	12	10	2
137	(주)경북구급차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67	054-842-0911	6	5	1
138	(주)경북세이브타임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2층 (대잠동)	054-283-1339	8	7	1
139	(주)경북이송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2길 24 (용상동)	054-823-1339	8	7	1
140	(주)경북이엠에스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23길 9 (삼북동)	053-814-0129	7	6	1
141	(주)구급대장이송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원서길 108 (푸른솔2차아파트)	054-286-0123	7	7	-
142	(주)더케어응급환자 이송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로16길 79 (사동)	053-814-8282	5	5	-
143	(주)신라응급	경상북도 경주시 뚝천안길 88-1 (동천동)	054-744-1339	11	11	-

연번	이송업체명	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구급차		
				합계	특수	일반
경상남도		10개소		73	72	1
144	(주)경남응급이송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12	055-246-1339	5	5	-
145	(주)구오구오응급 구조단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4길 10	055-941-9595	5	5	-
146	(주)한국에스오에스 구급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호암2길 98	055-649-2339	5	5	-
147	(주)한국응급이송단	경상남도 양산시 삼일로 136-1 (중부동)	055-388-6119	7	7	-
148	경남골든타임응급환자 이송단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047 2층 (풍유동)	055-332-1119	7	6	1
149	비원이엠에쓰(주)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157번길 22-8 1층 (삼계동)	055-333-3117	7	7	-
150	주식회사 레스큐라이프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18 1층 레스큐라이프	055-674-1164	5	5	-
151	주식회사 중앙구일일구급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로 185 201호 (봉암동)	055-237-9195	11	11	-
152	주식회사제일응급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419 상가동 201호 (신우마리나타운)	055-688-0129	7	7	-
153	주식회사하트세이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 73 301호 (양덕동)	055-744-2119	14	14	-
제주특별자치도		2개소		11	10	1
154	(주)제주구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복로 83 (오등동)	064-748-1190	5	5	-
155	대한응급구조단911 제주구급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복로 270 (오등동)	064-755-1339	6	5	1

붙임 15 민간구급차(응급환자이송업체) 현황 확인방법

1) e-gen 홈페이지 접속 (www.e-gen.or.kr)

- 메인 화면 가운데 '민간구급차 검색' 항목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e-gen homepage with a navigation bar at the top containing links like '응급실', '병원·약국',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처치방법', '홍보자료', and '공지사항'.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누구든! 언제든지! 어디서든!' and a map of Korea.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veral service tiles: '응급실 찾기', '지역 선택 또는 병동명으로 검색', '병원·약국 찾기', '민간구급차 검색' (highlighted), '자동심장충격기', '공지사항', '홍보자료', and '응급의료기관 평가'. The right sidebar contains various logos and links for partner organizations.

2) 시/도별 민간구급차 검색

- 시/도별 민간구급차 검색하여 기관명 및 기관 대표번호 확인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민간구급차 검색' (Private Ambulance Search) pag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with a dropdown menu for '시/도' (City/Province) and a '검색'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is a table of search results. The table has columns for '시도' (City/Province), '시군구' (City/District/Gun), '기관명' (Institution Name), '구급차 유형' (Ambulance Type), '차량번호' (Vehicle Number), and '기관 대표전화번호' (Institution Representative Phone Number). The first row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showing '서울' (Seoul) as the city and '강동구' (Gangdong-gu) as the district.

시도	시군구	기관명	구급차 유형	차량번호	기관 대표전화번호
서울	강동구	(주)	특수구급차		
서울	강동구	(주)	특수구급차		
서울	강동구	(주)	특수구급차		
서울	강동구	(주)	특수구급차		
서울	강동구	(주)	특수구급차		

붙임 16 Pre-KTAS 교육기관 현황 및 이수증 발급

1. Pre-KTAS 교육기관 현황

- ※ 2026년도 Pre-KTAS 교육은 대한응급의학회 KTAS위원회 홈페이지 (www.ktas.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교육 일정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기관은 향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re-KTAS 이수증 발급방법

※ 구급차기록관리 시스템(AiR) 내 마이페이지 작성

- Pre-KTAS 이수증 조회를 위한 면허(자격)번호 입력 필요

①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② '자격정보수정' 내 정보 입력 → ③ 저장

1)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내 [통합게시판] - [Pre-KTAS 교육이수 현황 등록관리] 접속

